

2023 국민연금 관리구제 사례집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목 차



1장. 이의신청

① 자격 및 징수 관리	3
② 급여 관리	8

2장. 심사청구-제도일반

① 자격 및 징수 관리	
1. 사업장가입자	12
2. 지역가입자	18
3. 임의·임의계속가입자	22
4. 반·추납보험료	27
5. 기타	37
② 급여 관리	
1. 노령연금	41
2. 분할연금	56
3. 반환일시금	65
4. 유족연금	76
5. 기타	84



목 차



3장. 심사청구-장애연금

① 장애연금	
1. 장애정도	92
2.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120
3. 기타	131

4장. 재심사청구

① 자격 관리	148
② 급여 관리	157
③ 장애연금	196

[●●●●●●●●]

제1장 이의신청

- 자격 및 징수 관리 -

1 자격 및 징수 관리

사례 1 과세자료를 근거로 기준소득월액을 소급하여 조정한 사례 수용

처분내용

신청인의 2017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8년 12월 1일자로 신청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직권 상향조정함

신청인의 주장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확인되는 소득금액을 근거로 기준소득월액을 소급해 하향 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 점

기준소득월액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법 시행령 제7조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법 시행규칙 제2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법 시행규칙 제15조 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결정

법 시행령 제7조는 지역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신청인의 경우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장기간 미납에 따른 부담이 크고, 국세청에서 발행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금액증명으로 신청인의 소득금액이 현저히 하향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민연금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임. 다만, 미납된 보험료에 한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사례 2 65세 이상인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직권상실 처분을 취소한 사례 수용

처분내용

1952년 3월생인 신청인이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개월을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공단은 2020년 6월 11일자로 신청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직권상실처리함

신청인의 주장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직권 상실되었으나 공단으로부터 65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실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 점

연금보험료 3개월 연속 체납으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직권상실처리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법 시행령 제21조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결정

법 제13조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까지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21조에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이 2020년 5월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로 신청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직권상실처리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다만, 공단은 65세 이상인 임의계속가입자가 3개월 연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자격 상실처리 전에 가입자에게 직접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자격 상실시 재가입이 불가함을 안내했어야 하나,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한 이력이 전혀 없으므로 직권상실처분을 취소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사례 3 65세 이상인 자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을 인정한 사례 수용

처분내용

1955년 6월생인 신청인이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금보험료를 연속으로 체납하여 공단은 신청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2020년 6월 11일자로 직권상실처리함
 그후 신청인이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65세 경과를 사유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거부함

신청인의 주장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체납하여 직권상실처리되었으나, 공단으로부터 직권상실에 대한 안내와 65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 점

65세를 경과한 자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법 시행령 제21조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상실

결정

신청인이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자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로 신청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직권상실처리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며, 신청인이 65세 도달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자 65세를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가입신청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도 적법함

다만, 공단은 65세 미만인 임의계속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여 그 자격이 직권 상실되는 경우, 해당 사실과 65세 경과시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함에 대해 안내했어야 하나, 신청인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65세 도달 전에 자격이 상실처리되고 그에 대한 자격변동확인통지서가 65세 경과 후에 발송되어 신청인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일실된 측면이 있다 할 것인바, 신청인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인정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사례 4	자격정리로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이 소급하여 지원제외 처리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납월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징수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납부신청을 인정한 경우 수용
-------------	---

처분내용

신청인이 1995년 7월부터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었으나 공단은 2002년 11월에 신청인이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1995년 7월부터 신청인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취소 처리함

신청인의 주장

1995년 7월부터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연금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는데 소급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부미납월이 발생했으나 징수권이 소멸되어 납부할 수 없다고 하는바,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

쟁 점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99조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법 제115조 시효

결정

법 제99조와 제115조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월의 연금보험료는 납부할 수 없음

신청인의 경우 2002년 11월에 자격정리로 인하여 소급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지원받았던 국고보조금이 환수되면서 연금보험료 일부 미납월이 발생하였으며 자격정리로 인하여 발생한 일부 미납월은 이미 징수권이 소멸되었는바,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이 소급 변동되어 일부 미납월이 발생되었으므로 공단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징수권이 소멸된 기간일지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제1장 이의신청

- 급여 관리 -

2 급여관리

사례 1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취소되었으나 소득있는 업무 비종사 연도의 초일을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수급권을 인정한 사례 수용

처분내용

신청인이 2019년 1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중, 공단은 2020년 10월에 신청인의 2019년 국제청 과세소득이 2019년도 A값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소처리함

신청인의 주장

2020년도 소득은 A값 미만이므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쟁 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소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관련법령(기준)

법 제57조 급여의 환수, 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결정

법 제61조 및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신청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공단이 신청인의 조기노령연금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연금액에 대해 환수결정한 것은 적법함

다만, 신청인이 조기노령연금 청구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소득이 A값 미만으로 된 시점에 청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신청인의 급여지급연령 도달 후 수급권이 취소되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후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점, 2020년도 소득이 A값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지급한 연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사례 2 소멸시효가 완성된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사례 수용

처분내용

신청인이 2012년 7월에 60세에 도달 후 2021년 5월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미해당 결정함

신청인의 주장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지도 몰랐고, 오래전 외국으로 출국하여 반환일시금 청구안내를 받지 못했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 점

소멸시효가 경과한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한지

관련법령(기준)

법 제77조 반환일시금, 법 제50조 급여의 지급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 제115조, 시효

결정

법 제7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면 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 권리는 법 제115조에 따라 5년이내에 행사해야 함

신청인은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미해당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다만, 수급권 발생 이후 9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1회 출장한 사실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거주불명등록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지와 출장지가 모두 행정관청으로 되어있어,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안내는 공단의 서비스에 불과하여 법적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수급권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제2장 심사청구 제도일반

- 자격 및 징수 관리 -

1 사업장가입자

사례 1 | 입갱수당 등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특수직종근로자로 자격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상시 갱내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고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입갱수당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갱내 석회석 채광작업장에서 일해왔는데 임금명세서상 입갱수당이 확인되는 2012년부터만 특수직종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

입갱수당이 확인되지 않아 특수직종근로자로 불인정한 공단 처분의 적법한지

관련법령(기준)

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시행령 제22조 특수직종근로자, 법 시행규칙 제16조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결정

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접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다른 직종의 일반근로자보다 부상,질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보다 퇴직시기가 이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55세로 규정하여 일반가입자에 비하여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으므로 그 자격에 대한 엄격한 확인이 필요함

특수직종근로자의 판단은 입갱수당 지급이 명시된 임금대장, 또는 그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 공신력이 있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처리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광업 종사자 중 상시 갱내에 종사하는 자의 직종에 한하여 입갱수당이 지급되면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한 공단의 업무처리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사례 2

입갱수당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증빙자료로 갱내종사 여부를 확인하고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신고하였으나, 공단은 임금명세서상 입갱수당이 확인되지 않음을 사유로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

청구인의 주장

사업장에서 월급명세서에 입갱수당을 누락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실확인원 및 자격증으로 상시 갱내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갱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갱내안전담당계원으로서 업무상과 실치사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도 확인되는바, 갱내에서 이십사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입갱수당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증빙자료로 갱내근무여부를 증명하는 경우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시행령 제22조 특수직종근로자, 법 시행규칙 제16조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결정

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접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다른 직종의 일반근로자보다 부상,질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보다 퇴직시기가 이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55세로 규정하여 일반가입자에 비하여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으므로 그 자격에 대한 엄격한 확인이 필요함
 급여명세서상 입갱수당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실확인원으로 갱내안전계원 선,해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증으로 갱내 채광공 및 화학공으로 선,해임된 사실이 확인되며, 공단의 출장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갱내작업 종사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 3 |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서 명의대여를 인정받았더라도 소급하여
사용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사업자등록 개시일인 2017년 7월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였고, 그 후 해당 사업장이 명의대여 사업장임
을 주장하며 사업장 사용자를 당연적용사업장 적용일로 소급하여 변경해 줄
것을 신고하였으나, 공단은 과세행정청의 부과취소일인 2019년 10월 이전으로
사업장 내용변경은 불가하므로 소급변경을 거부하고 이를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해당 사업장은 명의를 대여해준 사업장으로 2019년 10월경에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받아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다 사용자를 변경하였는데 국
민연금공단만 변경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쟁점

명의대여를 인정하여 사업자 등록일로 소급하여 사용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기준)

법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법 시행규칙 제 14조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결정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령에서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의 일치
여부에 관한 심사권을 공단에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명의대여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법령 사업장의
사용자 명의가 바로 소급하여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된 바도 없음
또한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하다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공단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사례 4

용역계약서 상 동업자 관계로서 계약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되었음을 주장하며 공단에 자격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과 해당 사업장이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동업자 관계로 계약하였음을 사유로 청구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불인정함

청구인의 주장

동업자 관계가 아닌 근로자로서 계약했음을 주장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와 본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용역계약서 상 동업자 관계로서 계약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를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법 시행규칙 제 14조 사업장 내용변경의 신고

결정

공단의 자격확인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정행위로 공단은 공권적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은 관련된 당사자로부터의 진술의 일치여부, 제출된 자료가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공단이 확인한 공적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자격확인인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공단이 확인한 강사 용역계약서상에 사업장과 청구인은 동업자 관계로서 계약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업무일지를 보면 청구인이 근로한 내용에 대한 사업장의 확인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관리감독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례 5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인정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납부예외일을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사업장 사용자인 청구인이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사유로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일을 5월로 소급하여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납부예외일을 6월로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사용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한 것으로, 공단이 자격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2020년 5월분에 대한 납부예외가 불가하다고 하나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예외일을 5월로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인정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납부예외일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법 시행규칙 제 14조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결정

국민연금법에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인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사업중단은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납부예외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업장이 다수 발생하여 공단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납부예외를 인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은 2020년 3월분부터 6월분 연금보험료 중 최대 3개월분에 한정하고, 신청기한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신청기한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사례 6 국세청 경정 근로소득을 근거로 특례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요청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법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9년 4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단은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함
 이후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경정자료를 근거로 2018년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근로자의 2018년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받았으므로 연금보험료도 정산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국세청 근로소득 경정자료를 근거로 특례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시행령 제7조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법 시행령 제9조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공단이 결정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실제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사업장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제도가 시행되었고, 특례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소득과 신고된 소득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고 있으므로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는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종사기간은 전년도이므로 청구인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요청하는 근로자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자료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근로자는 2019년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2020년 6월까지 적용되므로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2 지역가입자

사례 1 개인회생 변제 등을 이유로 자격취득 취소 및 납부예외를 요청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소득자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공단은 지역가입자 가입안내문 및 가입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직권으로 취득처리하고 연금보험료를 부과함

청구인의 주장

개인회생 변제 등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취소하고 납부예외 처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소득활동에 종사하나, 개인회생 변제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조 가입대상, 제9조 지역가입자,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결정

사업중단, 실직, 휴직 혹은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와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회생 신청요건은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가 이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므로 개인회생 결정을 사유로 납부예외는 불가함

청구인은 사업소득자로서 소득활동 중단이 확인되지 않고,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며, 다른 납부예외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납부예외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 2

공단이 실제 소득에 대한 확인없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직권으로 취득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공단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고 특수형태근로자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직권으로 취득처리하고 중위수 소득금액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함

청구인의 주장

임대소득이 월30만원에 불과한데 공단이 소득에 대한 확인없이 월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이 가입신고 안내를 했음에도 청구인의 신고하지 않아 직권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취득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9조 지역가입자, 법 시행령 제6조 가입자 자격취득 시와 납부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법 시행령 제9조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결정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사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데 공단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직종형태의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가입안내문, 직권가입예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결정하였고, 자격취득 결정시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위수 소득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납부예외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결정은 취소가 불가하다고 판단함

사례 3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은 적법하다는 사례 기각

처분내용

공단은 지역가입자로 농어업인 국고지원을 받고있던 청구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가 접수되어 청구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함

청구인의 주장

해당 사업장에서 15일간 근무하였으며, 사업장 퇴사 후 공단으로부터 농어업인 국고지원 안내문을 받기 전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줄 모르고 있었던바, 공단에서 자격변동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하고 기존 가입자격을 유지해 줄 것을 주장

쟁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9조 지역가입자, 법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법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법 제23조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결정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에 이를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역가입자에게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과 같이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통지서로 자격변동이 별도로 통지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본인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리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유로 이루어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 4 임의가입대상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지역가입자로 착오처리하여 지역 가입자 가입기간을 임의가입 기간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지역가입자 가입신고를 하였고, 공단은 이를 처리하였으나 이후 공단은 청구인이 퇴직연금등수급권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역가입자 이력을 취소함

청구인의 주장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공단이 지역가입자로 착오처리하여, 그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취소되었는바, 이는 공단의 착오이므로 현재까지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한지

관련법령(기준)

법 제9조 지역가입자, 법 제10조 임의가입자, 법 제14조 자격 등의 확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제3조 적용범위 등

결정

공단이 청구인의 가입신청을 처리할 당시 퇴직연금등수급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였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취득을 결정하였고,공단 상담 이력에 청구인에게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경우 임의가입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이미 퇴직연금등수급권을 취득하였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 이상으로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공단이 관련자료를 확인하였다면 당연히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결정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한 기간의 자격을 임의가입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3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사례 1 중복급여의 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가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연금보험료 최종 납부월의 말일인 2019년 1월로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함. 이후 청구인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을 결정함

이후 청구인은 가입기간이 119개월이 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상실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일 변경은 불가함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발생하여 본인의 노령연금이 지급 정지되었으므로, 본인의 가입이력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77조 반환일시금

결정

공단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 최종납부월의 말일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로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급여의 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 2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자가 65세 경과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인 청구인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연금보험료를 미납하여 공단은 2018년 1월분 연금보험료 납부마감일의 다음날로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함
 이후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65세 경과를 사유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이 불가함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최근 항암치료 등으로 통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하고 65세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65세를 경과한 자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결정

공단은 청구인이 연금보험료를 2개월 연속 미납하여 청구인에게 3개월 연속 미납시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됨을 안내하는 SMS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3개월 연속하여 연금보험료를 미납하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자격변동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65세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또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로부터 청구인이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다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요건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법 집행기관인 공단이 청구인에게만 법률의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 3	공단의 착오 안내가 청구인에게 극심한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 65세를 경과한 자의 임의계속가입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65세 경과를 사유로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함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노령연금 청구를 위해 내방했을 당시 이미 65세를 경과하였음에도 공단이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안내하여 자금을 마련해 온 것이므로 임의계속가입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의 착오안내를 사유로 65세를 경과한 자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결정

공단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당시 이미 65세를 경과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에 대해 착오안내한 부분이 확인되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 및 추납보험료 납부요건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령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공단이 착오 안내하였더라도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할 수 없고,

행정청인 공단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 이미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에게 공단의 착오 안내로 인해 손해가 극심하여 청구인의 신뢰를 정당화할만한 법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 4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임의계속 예정탈퇴신청으로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 취소를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서 임의계속 예정탈퇴를 신청하여 공단은 청구인이 신청한 임의계속 예정탈퇴일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임의계속가입 탈퇴에 대해 어떤 안내도 받은 적이 없고 최근에야 사실을 알게 된바,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임의계속 탈퇴예정일로 청구인의 자격을 상실처리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결정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가 급여수급요건을 갖추었으나 계속 가입하여 연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 예정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급여수급시기, 미납내역 등을 확인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예정탈퇴 처리를 하고 있음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취지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청구인이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을 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단에서는 청구인이 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탈퇴일로 상실처리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안내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 5

임의계속가입자가 120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반환을 위해 자격상실일 변경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 탈퇴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금보험료 최종 납부월의 말일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상실일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가입기간 120개월만 충족하면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금전이 필요하므로 추가 납부된 2개월분 보험료는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120개월을 초과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반환을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결정

노령연금 수급권은 연령과 가입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일 뿐 가입기간 120개월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120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반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어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이를 법률상 근거 없이 취소하거나 반환할 수 없음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을 확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가입하고 탈퇴하며, 자격상실일은 가입자가 탈퇴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또는 마지막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말일로 결정하는바,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4 반납, 추납 보험료

사례 1 개인사정 변경에 의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후 공단에 추납보험료 납부를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이미 납부한 추납보험료는 취소가 불가함을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노후준비를 위해 무리하여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납부한 이후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음을 알게된 바 추납보험료 납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납부한 추납보험료를 개인사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결정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처분은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바 유효하게 형성된 행정처분을 향후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취소한다면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제한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시 제출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기초연금액 감액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추납보험료 납부 시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납보험료 납부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액 감액 등을 이유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사례 2 공단직원의 착오안내로 납부할 기회를 일실한 반납금에 대해 납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반납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고 있던 중 공단에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조기노령연금 청구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아직 납부하지 않은 반납금의 징수권을 소멸처리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 직원이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에도 분할납부 중인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였는데, 이로 인해 반납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잔여 반납금의 일시납부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직원의 착오안내를 사유로 징수권이 소멸된 반납금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8조 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법 제99조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법 시행령 제52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결정

공단이 청구인에게 조기노령연금액을 수령하는 중에도 매월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익월 연금액에 반영된다고 안내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공단이 정확한 안내를 했다면 그간의 상담이력과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반납금을 완납한 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공단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반납금 징수권에 법 제99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공단의 착오안내가 있었던 청구인에게 반납금의 일시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징수권이 소멸된 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 3 반납금 납부에 따라 재산정된 노령연금액을 지급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적용해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반납금 납부를 신청하고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한 후 반납금을 일시 납부하였고, 공단은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2년 전 상담 시 안내받았던 반납금 납부액 및 노령연금액과 올해 실제로 반납금을 납부한 금액을 비교해보면 반납이자는 늘었으나 실제 지급된 노령연금액은 너무 적으며, 반납금 납부에 따라 재산정된 노령연금액이 지급사유발생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쟁점

반납금 납부로 재산정된 노령연금액 및 연금지급 시기가 적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4조 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78조 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법 시행령 제52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결정

반납금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기간에 대해 이자를 산정하는바 2년전 상담시와 실제 반납금 납부를 신청한 때의 이자가 달라진 것은 불가피하며,

2년 전 상담시보다 많은 금액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였음에도 현재 지급되는 연금액과 수급분 연금액이 상담 시 보다 적은 것은 청구인의 소득활동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또한, 반납금을 납부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납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반납금을 납부한 월까지는 반납금 납부가 반영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월부터는 반납금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재산정한 후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사례 4 공단의 착오안내를 사유로 반납금 납부취소를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반납금 일시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였고, 이후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추납보험료 신청대상기간이 없음을 사유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이 불가함을 통지함

이에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반납금에 대한 납부취소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이미 납부된 반납금의 납부취소는 불가함을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반납금을 납부해야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반납금을 신청, 납부하였는데, 추납보험료 납부가능기간이 없어 추납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공단의 안내를 믿고 납부한 반납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의 착오안내를 사유로 반납금의 납부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8조 반납금, 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결정

대법원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를 사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그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공단의 평생고객상담이력을 보면 공단이 청구인에게 반납금 납부 후 추납보험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단의 안내를 신뢰하여 반납금을 신청,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며, 공단이 추납보험료 납부제도에 대해 안내할 당시 이미 공단은 청구인에게 추납보험료 신청대상기간이 없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착오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므로 예외적으로 반납금 납부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 5 개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반납금의 납부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을 사전 청구한 후 반납금 납부를 신청, 납부하였고, 공단에 반납금 납부를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이미 납부한 반납금은 취소가 불가함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노령연금 청구시 반납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채 반납금 납부신청 및 납부를 했는데 이혼이력이 있어 분할연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반납금 납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개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납부한 반납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8조 반납금

결정

공단은 반납금 납부제도가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납부하는 절차임을 고려하여 반납금 납부 후 이를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납금 납부신청 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반납금 납부신청 시 제출한 반납금 납부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반납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납금 납부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의사항란에 반납금 납부 전, 후 이혼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되어 당초 안내했던 예상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바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의 반납금 납부신청 및 납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단의 업무처리에 하자는 없었으며, 청구인이 반납금을 납부한 기간은 반납금 신청과 납부를 통해 청구인의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어 법률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 6

신용카드로 수납한 반납금에 대해 단순변심으로 납부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반납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였고, 그 중 3회차분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납부한 반납금의 거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신용카드 수납은 결제 당일에만 취소 가능함을 사유로 반납금 납부취소 요청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여신전문금융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반납금 카드납부 할부거래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단순변심에 의한 반납금 납부취소 요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2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법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법 제90조의3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법 시행령 제59조의4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결정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국민연금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사적거래를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그 대금 또는 대가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되므로 연금가입자와 공단의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나열하는 금융상품에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단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반납금 납부 후 단순변심 및 개인의 사정변경 등으로 납부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납부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과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용카드 수납의 경우 수납 당일 온라인 마감시간 내에 한하여 수납취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납부 후 수일이 경과하여 납부취소 및 신용카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 7 공단의 안내소홀을 이유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가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101개월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 납부하였고, 이후 납부한 추납보험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추납보험료 납부취소가 불가함을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시 월 보험료를 상향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월보험료를 상향한 후 추납보험료를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기납부한 추납보험료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의 안내소홀을 이유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법 시행령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결정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및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령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실령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행정청이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시 제출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에 따른 확인서의 유의사항에 추납보험료 납부 후 더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납부하기를 희망하여 기납부한 추납은 취소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준소득월액 상향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및 납부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례 8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자가 추납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노령연금을 수급중인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이 불가함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추납제도를 알지 못한 채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이제야 추납제도를 알게 되었는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노령연금 수급자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50조 급여 지급, 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납부

결정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입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미 60세에 도달하였으므로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자격취득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요건을 갖추 수 없다고 할 것임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령 공단의 안내가 없다고 하여도 이미 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의 적용을 달리하여 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할 당시 추납보험료 납부 미희망함을 확인한 내용도 확인되는바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 9 추납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가 자동이체 출금 전일에 납부취소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한 후 공단에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는 불가함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였으나 금전이 필요해 자동이체 출금 전일에 공단에 취소를 문의하였고 이에 공단은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비우라고 안내해주어 잔고를 비웠으나, 다음날 배우자가 해당계좌로 금전을 입금하여 납부되었으므로 추납보험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자동이체로 납부된 추납보험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결정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추납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자가 추납보험료 전액에 대해 미납한 후 자동이체 출금 전일까지 자동이체 해지신청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취소를 요청하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취소를 인정하고 있음

청구인은 자동이체 출금 전일에 공단에 취소를 문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단 평생고객상담이력, 통화기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는 공단과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추납보험료 납부취소 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및 납부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시 제출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추납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추납보험료 납부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 10 2020년 12월 29일 법 개정에 따른 추납보험료 납부가능기간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177개월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를 신청하였다가 취소하고, 2021년 9월 공단에 195개월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2020년 12월 29일 법 개정으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기간이 119개월로 제한됨을 안내하고 195개월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불인정함

청구인의 주장

2020년 9월경 공단에 추납보험료 법개정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법 개정이 즉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내하였는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추납보험료 납부대상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95개월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법 개정 전에 실시한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개정법을 적용을 배제하고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결정

법 제9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인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법 시행 후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2021년 9월 추후납부를 신청한 청구인은 개정법 적용대상임

법 제92조 개정 취지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납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추납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개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한 것이며, 국민연금제도는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령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는바 법 집행기관인 공단이 법령의 적용을 청구인에게만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임

5 기타

사례 1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을 6개월을 초과하여 소급지원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2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2019년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시점부터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농어민 국고보조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2015년부터 농지원부를 보유하였는바 농지원부 최초작성일부터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주장

쟁점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을 6개월을 초과하여 소급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2007년 7월 23일 제8541호, 2014년 1월 14일 개정 법 부칙 제7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업무처리기준 신청일 직전 농어업인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의 6개월 범위 내에서 소급지원

결정

공단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간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신청 시점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일 직전 농어업인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의 6개월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음

공단은 매년 가입내역안내서에 농어업인 국고보조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안내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만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 2 60세 이상인 자에게도 실업크레딧을 지원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인 청구인이 공단에 실업크레딧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60세 이상인 자는 실업크레딧 지원신청 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

60세 이상을 이유로 실업크레딧 지원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결정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고,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업크레딧 신청요건 중 연령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은 공포, 시행됨으로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는바, 법 집행기관인 공단이 청구인의 주장만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 3 본·지점별로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공단은 해당 법인의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임을 확인하고 연금보험료 지원 비대상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세무회계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인사, 노무, 경영 등을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업계 전부가 일명 독립채산체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관행이며, 각 지점은 본점과 관계없이 4대보험 등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점별로 사업장 단위를 판단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법인일 경우 본, 지점별로 사업장 단위를 판단하여 보험료 지원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법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법 시행령 제73조의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법 시행령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결정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장에 속한 저소득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형성을 지원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 국민연금법에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를 권리, 의무가 동일한 경우로 해석하여 본점과 지점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법적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하나의 사업장을 실무상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은 원활한 국민연금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법인격이 새롭게 부여되는 것은 아닌 점,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해당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제2장 심사청구 제도일반

- 급여 관리 -

1 노령연금

사례 1 가족관계등록부에 맞게 주민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수급권이 취소되었으나 공단의 귀책사유와 신뢰보호를 이유로 수급권을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어 정정하였고, 공단은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수급권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연금액을 환수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주민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하도록 정정하였을 뿐인데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

정정된 생년월일이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권을 취소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제61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구법 부칙 제9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법제57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

결정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요건과 연령도달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고, 공단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권자 등의 생년월일이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연령을 재계산하여 급여 수급권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함

다만 생년월일의 변경이 법원의 판단을 요건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 사항이 아닌 행정상의 착오기재 사항을 단순 정정한 것이라면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단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상당기간 청구인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되었고 이로 인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 2 법원의 허가에 따라 생년월일이 소급정정되었음을 이유로 노령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생년월일을 정정하였고, 공단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정정일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함. 이후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자격상실일인 생년월일 정정일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하여 노령연금을 지급결정 및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허가로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므로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노령연금도 소급하여 지급해줄 것을 주장

쟁점

정정된 60세 이후의 최초 자격상실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 급여의 지급, 법 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록부의 정정

결정

공단은 급여수급연령을 확인함에 있어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따르며, 급여수급연령 도달은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에 의하여 판단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정 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정정 전의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어 온 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연금수령액이 감소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단은 정정된 생일 이후의 최초 자격상실일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 3	반납금 분할납부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지급이 결정된 청구인이 잔여 반납금 납부를 이유로 노령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청구인은 반납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던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노령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노령연금 지급결정 시 잔여 반납금의 징수권이 소멸됨을 알 수 없었으므로 노령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잔여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

쟁점

반납금 분할납부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지급이 결정된 청구인의 잔여 반납금 납부를 이유로 공단의 노령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 급여의 지급, 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제78조 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법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민법 제111조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결정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공단의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지가 쟁점임

공단은 청구인이 반납금 분할납부 신청 당시 분할납부 중 연금을 청구하면 일부 납부한 금액만큼만 반영되어 연금이 지급됨을 설명하였고, 청구인이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자 공단은 청구인이 잔여 반납금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므로 공단의 처분에 위법, 부당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단이 지급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 청구철회 또한 불가능함

사례 4	공단이 일부납부월 추가납부와 체납보험료 납부의 차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연금수급시기가 지연되었음을 주장하여 일부납부월 추가납부를 인정한 사례 인용
-------------	--

처분내용

청구인은 당월분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완납한 후 자동이체 계좌에서 일부가 이중 납부되었고, 공단은 이를 익월 연금보험료에 충당하였음 그 후 청구인이 익월 연금보험료를 납부마감일 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자 공단은 청구인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사유로 체납보험료 납부일을 지급 사유발생일로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상당시 일부납부월 납부와 미납월 납부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받지 못했고, 일부납부월 납부와 미납월 납부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함

쟁점

공단이 일부납부월 추가납부와 체납보험료 납부의 차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금수급시기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7조의2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계산, 법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결정

공단은 수급권자에 따라 일부납부월 납부와 체납보험료 납부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유, 불리가 상이할 수 있어 수급권자에게 이를 안내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일부납과 미납분 고지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공단이 상세한 안내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공단은 청구인에게 일부납부월 추가납부 및 미납분 납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실시하지 않았고, 공단이 이를 정확히 안내하였다면 청구인은 미납보험료 납부로 연금수급시기를 늦추기보다는 일부납부월을 추가납부하여 연금수급시기를 결정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일부납부월 납부를 인정해 연금수급시기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 5 개별적인 연금보험료 체납사유를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인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는 월의 말일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청구인이 자격상실일의 연금보험료를 납부마감일 후에 납부하여 공단은 체납보험료 납부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보이스피싱을 당해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일 당일 16시에 통장을 출금정지하였는데 그 시각 이전에 보험료를 출금해 가지 않은 공단의 착오를 인정하여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보험료를 체납한 이유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결정

국민연금법에 노령연금은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을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연금보험료를 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 소급하여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강행규정임

청구인이 납부기한 경과 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 납부를 사유로 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날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 6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 시기, 예상금액에 대한 상담을 조기노령연금 지급청구로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청구일을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하고 익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에 조기노령연금 문의 시 공단에 방문신청이 필요하다든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주지 않았고, 신청하면 익월부터 지급받는다고만 안내하여 조기노령연금 청구가 된 것인지 알았으므로 한 달 치 조기노령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줄 것을 주장

쟁점

조기노령연금 관련 안내를 조기노령연금 청구로 인정하여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 급여 지급, 법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결정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공단에 그 지급을 청구하고 공단이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임

청구인의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 수급시기, 청구시기에 따른 예상연금액 등에 대한 상담 외에 조기노령연금 지급청구에 대한 상담은 없었고, 상담 당시 청구인에게 조기노령연금의 전화 청구가 가능하다고 오인하게 할 만한 안내는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날을 청구일로 보고, 청구인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청구일로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 7	<p>체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지연 등을 이유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청구인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 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였고, 공단은 체납보험료 납부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연금보험료 고지서 송달지연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그로 인해 연금수급시기가 지연되었으며 공단에서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은 잘못도 있으므로 연금수급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주장

쟁점

체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고지서 송달지연 등의 사유를 인정하여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 급여의 지급, 법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법 시행규칙 제3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결정

법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며, 체납보험료 납부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소급하여 받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한 것임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도 가상계좌납부 등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으므로 설령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거나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단이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제도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는바, 해당 사유로 청구인의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해줄 수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 8 추납보험료 납부월의 익월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노령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10월 말일에 공단에 내방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 납부하고, 당일에 임의계속가입 탈퇴신고와 노령연금 지급청구를 하였음
공단은 임의계속가입 탈퇴신고일의 다음날인 11월 1일을 자격상실일로 결정하고, 해당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12월부터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과 상담 시 10월 말일까지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11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여 말일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추납보험료 납부월의 다음달이 아닌 그 다음달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

월 말일까지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노령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업무처리기준 지급연령도달시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임의계속가입 후 충족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이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임

결정

청구인이 공단에 추납보험료 납부를 상담할 때 이미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있어 청구인이 원하는 시기인 11월에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0월 중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 추납보험료 납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없고,

11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청구인에게 임의계속가입자 취득, 상실, 추납보험료 납부시기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은 10월 중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 9	<p>추납보험료가 당월에 자동이체로 납부되므로 익월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의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인정한 사례 인용</p>
-------------	---

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이던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 및 노령연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공단은 추납보험료 납부일인 4월 9일로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였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3월에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시 공단이 추납보험료는 당월인 3월에 자동이체로 납부되므로 익월인 4월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므로 노령 연금을 4월부터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시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연금수급권 발생일이 변동됨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공단의 착오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법 시행령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 등, 법 시행령 제52조 반납금의 납부기한 등

결정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3월에 하면서 3월 25일에 추납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부되므로 4월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하여 추납보험료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는바, 만약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시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연금수급권 발생일이 변동된다는 적정한 안내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을 자동이체 납부 이외의 방법으로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단의 안내를 신뢰하여 노령연금 수급이 늦어진 청구인의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 10 개정 전 법을 적용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공단은 청구인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소득활동기간에 대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과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월평균 근로소득이 A값을 1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음에도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

쟁점

수급권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수급권자에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1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63조 노령연금액, 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구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결정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과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2015년 1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감액을 모색하여 연령에 따른 일률 감액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감액으로 변동되었음

청구인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며, 수급권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개정 규정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인 안정성을 위하여 개정 법 시행 전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음

사례 11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된 국세청 소득자료와 다른 금액으로 소득있는 업무종사 여부 판단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공단은 청구인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소득활동기간에 대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과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근무했던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퇴사 익년도에 소득금액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퇴사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된 국세청 소득자료를 수급권자의 사정에 따라 공단이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제61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구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결정

공단은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 신고된 국세청 소득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며, 국세청 소득자료가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득자료를 경정한 후 공단에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단에 국세청 소득자료와 다른 소득금액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을 공단이 수용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국세청 과세자료의 소득금액과 다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음

사례 12	소득이 있는 업무 판단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공단은 청구인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소득활동기간에 대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주차장 임대사업을 낙찰받아 부동산 임대료를 선납하였는데 공단은 사업소득 산정시 선납한 부동산 임대료를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을 제외하면 실질소득은 마이너스이므로 연금을 감액한 공단의 처분은 부당함

쟁점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 손익에 반영하여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1조 노령연금의 지급권자, 법 제63조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결정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결손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자본유지도 못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세부담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서 손익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공단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고, 과세관청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경정하여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만 법 적용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및 종사기간을 적용하여 소득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판단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 13

연금의 지급연기 이후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여 공단은 이를 결정함 추후 공단은 청구인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연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지급연기신청 이전에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해 정산금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연금지급의 연기신청 이후의 소득금액도 합산하여 소득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주장

쟁점

연금의 지급연기 이후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결정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로 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과세기간은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외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연금법령상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를 판단할 때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등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종사월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례 14 65세 생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있는 업무종사 여부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공단은 조기노령연금 지급받고 있던 청구인이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을 결정한 후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정산금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간 합산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정산금이 발생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65세 이후에 일시적 소득이 발생하였고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쟁점

청구인에게 발생한 일시적 소득이 65세 이후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65세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정산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결정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확보한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상에 청구인이 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5세가 된 시점(8월)까지 소득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공단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했던 금액은 청구인이 65세가 된 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도 과세자료상의 금액이 65세 후에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국세청 과세자료상에서도 청구인이 65세가 되는 해에 사업자등록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의 정산금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사례 15	공단의 권유로 반납금을 납부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금액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안내소홀을 이유로 정산금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인 청구인은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신고하였고 반납금 납부를 신청하여 이를 납부함
 공단은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액금액을 산정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을 결정하였고, 추후 청구인의 국세청 과세자료상 확인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연금액과의 정산차액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이 반납금 납부를 권유해 납부하였는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및 정산금 결정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으므로 정산금 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반납금 납부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금액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정산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결정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청구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는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정산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법령에 따라 운용되는 제도이고 법령은 공포, 시행되면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각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처분의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반납금을 납부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정산되었을 것이고, 청구인의 반납금 납부로 감액되는 노령연금액 자체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공단의 연금액 정산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음

2 분할연금

사례 1	이혼 전 체납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여 인정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이혼 전에 미납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였고, 전 배우자는 청구인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이혼 전 미납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한 경우 해당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법 제50조 급여 지급,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결정

법 제17조에 급여 수급요건 및 급여액 산정 가입기간 계산 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혼 전 미납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여 인정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처리한 공단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사례 2 분할연금 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수급권 포기를 인정한 사례 수정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청구인의 급여 수급연령도달일로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 및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분할연금 수급으로 형편이 어려운 전 배우자의 연금액이 차감되고, 본인의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액되는 것을 알았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할연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분할연금 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 급여 지급,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결정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음

공단은 청구인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는바 공단의 처분에 하자는 없으나, 청구인이 분할연금을 청구할 당시 공단은 이미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분할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액의 변동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관련 상담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분할연금 청구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액 및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이 동시에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결정은 인정하되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수급권 포기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 3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공단은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전 배우자가 수년 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가입기간 중 전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기간은 없으니 분할연금 지급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 급여 지급,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법 시행령 제45조의2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법 시행규칙 제22조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결정

분할연금 수급권은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로 이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급여이므로 그 수급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특히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자료로 인정되는 기간임에도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

전 배우자가 수년 전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제출된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은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은 해당 소송에서 소기의 결과를 얻기 위한 일방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례 4	이혼 합의서상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연금분할 비율을 달리 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지급을 연기하고 있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공단은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 변경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이혼 합의서에 이혼 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 급여 지급,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법 시행령 제45조의2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법 시행규칙 제22조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결정

대법원은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일체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회보험의 일환인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까지 포함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례 5

이혼신고서에 작성한 실제 혼인일과 이혼일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판단해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혼인 중 합의하에 별거하였고, 이혼신고서에 실제 혼인일과 이혼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기재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여 줄 것과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별거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므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이혼신고서에 기재한 실제 혼인일과 이혼일을 분할연금 산정시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 급여 지급,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법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결정

분할연금 수급권은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로 이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급여이므로 그 수급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특히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자료로 인정되는 기간임에도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 이유서와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하단에 실제 결혼년월일 1980년 8월부터 동거, 실제이혼년월일 1988년 5월부터 이혼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이혼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또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라고 할 수 없음

사례 6

이혼 후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이혼 후 지급받은 청구인의 반환일시금 수령액 중 일부를 이미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은 분할연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쟁점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 급여 지급,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법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결정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이혼 이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포함된 본인의 가입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게 되면 타방 배우자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분할연금 수급권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공단은 이혼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이혼 후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반납금으로 복원되는 가입기간이 혼인기간에 해당할 경우 이를 분할연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음

분할연금제도는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공단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이혼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이혼한 상태에서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기간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산입하여 분할연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례 7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분할연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이혼 후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이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여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27년을 살다가 이혼하고 혼인 중에 기여한 바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는데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고 하여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쟁점

수급연령도달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전 배우자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결정

분할연금 제도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된 경우 혼인기간 중 이혼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고려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이혼 배우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임

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권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 중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하나, 청구인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전 배우자 사망시점부터 청구인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음

사례 8

공단 착오안내를 사유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를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이를 결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공단에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를 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구 국민연금법이 적용되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의 안내에 따라 연금분할비율을 협의하여 공증을 받아 신고했는데 분할비율 별도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

쟁점

공단이 착오 안내하였음을 사유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대상이 아닌 자에게 분할비율 별도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구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법부칙 제13642호 제1조 시행일, 제2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적용례

결정

청구인의 상담이력을 볼 때 공단이 착오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나, 공단의 착오안내에 따라 당사자 간에 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한 협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제도는 이혼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법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착오안내를 이유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고를 인정한다면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어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개정법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도 맞지 않는바, 분할연금 수급권이 2016년 12월 30일 이전 발생하여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분할비율 별도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비율 별도결정을 인정할 수 없음

사례 9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진의와 다르게 연금분할비율이 결정되어 이미 신고된 분할비율의 변경을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를 하였고, 공단은 이를 인정하였음
그 후, 청구인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공단은 연금의 분할비율 신고는 1회만 가능함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의 안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7 대 3으로 협의하였는데, 노령연금 지급총액 기준이 아닌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이 결정되어 연금이 지급되는바, 안내받은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분할비율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이미 신고된 분할비율이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진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분할비율을 정정해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법 시행규칙 제22조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결정

분할연금 산정대상이 노령연금액 전체가 아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는 공단에서 산정하기 전까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신고된 연금분할 비율이 각자가 수령하기로 합의한 연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정정해 주는 것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러한 조치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연금분할비율 신고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청구인과 전 배우자 모두가 분할비율 별도결정 변경을 일관되게 요청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주장대로 분할비율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3 반환일시금

사례 1

공단으로부터 미지급급여 청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망인은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공단에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 사망 후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이 근무 중 갑자기 사망하였으나 산재 처리가 거부되어 경황이 없었고,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잦은 이사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므로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으로부터 급여 청구안내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법 제77조 반환일시금, 법 제115조 시효

결정

소멸시효제도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그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권리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것 등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미지급급여는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급여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미지급급여 수급권은 원 수급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유족이 그 미지급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미지급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음

사례 2 청구인이 국외 이주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중국국적의 청구인은 공단에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출국예정일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그 후 청구인이 재입국하여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본국귀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코로나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어 출국예정일보다 15일 정도 늦게 출국하였는데 공단이 출국일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주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재입국한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7조 반환일시금, 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업무처리기준 :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국외이주로 인정, 1개월 이내 출국예정인 경우 사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발생일은 최종 출국일로 함

결정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출국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출국예정일을 확인한 후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처리기준에 부합함
 이후 청구인이 재입국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일 현재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사례 3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본인의 가입기간 및 예상 연금액을 문의하여 공단은 청구인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임을 확인하고 반환 일시금 및 노령연금에 대해 안내하였음

그 후 청구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고, 사업장에서 미납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청구인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자 공단은 청구인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임을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에 문의 시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120개월이 충족되기 전에 청구하라고 하여 청구하였는데 사업장이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쟁점

공단에서 반환일시금 수급이 가능함을 상담받은 후 가입기간이 변동되어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상담내용을 근거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법 제77조 반환일시금

결정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 보험관계의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사용자 또는 국가가 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보험원리에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보험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급여는 법률에 규정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음

반환일시금의 지급요건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었던 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 이미 120개월을 충족하여 반환 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 4 생계곤란 등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장기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며, 건강보험료도 미납해 병원진료가 불가능하고 재산도 없는데, 지급연령 도달 전에 생명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생계곤란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7조 반환일시금

결정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에 미달한 중도탈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각출료를 환급해 주는 일종의 보험급여로 사보험적 성격을 지닌 것인데, 반환일시금을 일정한 제한 없이 과도하게 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의 충족의지가 감소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강제가입이 사후 실효되어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이 노후보장 등을 대비한 사회보험이 아닌 목돈 적립을 위한 강제저축제도로 바뀌게 되며, 사회 연대성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실함은 물론, 국민연금 재정 건실화의 장애요인이 되어 장기적인 국민연금 급여를 위한 재정기반을 위협하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국민연금법상 엄격히 열거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기실직, 생계곤란 등의 사유는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 5	법 개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 청구인이 개정 전 법을 적용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망인은 기초수급자임을 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됨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사망 시 유족연금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망인이 60세 당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주장

쟁점

법 개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 청구인에게 개정 전 법을 적용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7조 반환일시금

결정

2016년 5월 29일 개정 및 2016년 11월 30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72조는 그동안 상당한 가입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자의 사망 시에도 일정한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 법 시행일 이후 사망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공단이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6년 11월 30일 전이고, 망인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자로 개정법 적용 대상이며, 사망 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로, 유족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음

사례 6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으로
노령연금수급권자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으로 인해 전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나 자녀가 2명 있어 출산크레딧으로 인해 노령연금을 수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 사정상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노령연금 수급 의사가 없음을 주장

쟁점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으로 인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된 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법 제77조 반환일시금

결정

국민연금제도는 보험관계의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사용자 또는 국가가 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보험원리에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보험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급여는 법률에 규정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음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뿐만 아니라 출산크레딧 산입을 통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출산에 의해 추가되는 가입기간과 관련하여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두명 중 한명의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어 가입이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추가 가입기간 전부를 산입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출산에 의해 추가되는 가입기간으로 인하여 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 지급은 불가함

사례 7

구법에 따라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법 개정에 대한 공단의 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기 전까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5년을 경과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후 공단으로부터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반환일시금 수급을 위해 수급연령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구법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부칙 제16조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 구법 제95조 시효

결정

퇴직연금등수급권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2000년 12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법률 제5623호의 부칙 제16조 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므로 통상적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와 달리 공단의 개별적인 안내가 없는 경우 이를 인지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청구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공단은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급여 지급연령 도달일을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 오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 8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애일시보상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된 가입 기간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상병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으로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일 현재 장애연금 4급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지급을 거부함

그 후, 청구인은 공단에 본인의 가입이력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후에 가입기간이 없음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장애등급 4급이나 시효가 완성되어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고,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니 일시금도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시효가 완성된 장애일시보상금의 산정기초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7조 반환일시금, 업무처리기준상 장애일시금보상금의 산정기초가 된 가입기간은 일시금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지 아니함

결정

청구인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없음에도 장애일시보상금의 산정기초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가입기간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하게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장애연금 지급결정 당시 청구인은 이미 60세가 경과되어 장애연금 청구를 철회해야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더라면 청구인은 실익이 없는 장애일시보상금의 청구를 철회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 9

반환일시금 상당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나
사망일시금 한도액을 적용하여 지급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망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공단에 사망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사망일시금 한도액을 지급함

망인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
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4배를 지급함

청구인의 주장

사망일시금 한도액이 아닌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한도액 지급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7조 반환일시금, 법 제80조 사망일시금

결정

사망일시금 제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으면, 사망한 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어 가입자 간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되므로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보완적 제도이며,

국민연금제도는 법률이 정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기여와 급여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험의 원리상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망일시금 한도액이 아닌 반환일시금 상당액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례 10	선박에서 스스로 추락한 사람의 사망일시금 소멸시효 기산일을 행방불명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으로 보지 않고, 실종선고심판 확정일부터 기산한다고 결정한 사례 인용
--------------	---

처분내용

청구인은 망인의 부친으로 망인의 가입이력에 대해 공단에 사망일시금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공단은 사망일시금 지급권이 발생한 날인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날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이 실종되고 한달 후에 사고를 알았고, 30년 전부터 따로 살았으며 사망 관련 처리는 망인의 형이 하여 국민연금에 대해 몰랐고, 망인은 일반실종으로 5년 뒤에 사망처리가 된다고 하여 실종선고 후 연금을 신청하자 시효완성으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공단으로부터 일시금 청구에 대해 한번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선박에서 스스로 해상으로 추락한 사람의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사망 일시금 지급권 발생일과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5조 사망의 추정, 법 제80조 사망일시금, 법 제115조 시효, 법 시행령 제23조 사망의 추정,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결정

사망의 추정은 사망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나 사망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반복할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추정력은 상실되는바, 사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급여청구권자의 과실 없이 사망일시금 지급권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사망추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망일시금 지급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망의 추정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일시금 지급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날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소멸시효는 법원의 실종선고심판확정일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례 11

사망일시금 한도액이 아닌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단에 사망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이를 결정하여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망인이 납부한 금액만이라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한도액 지급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법 제80조 사망일시금

결정

사망일시금 제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망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혜택이 전혀 없게 되어 발생하는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보완적 제도이고,

국민연금제도는 사회계층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가입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여를 한 경우라도 법률이 정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기여와 급여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험의 원리상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유족연금

사례 1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인 망인의 부모는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망인과 생계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의 장해연금이 망인 계좌로 입금되면 청구인들이 이를 인출하여 생활하였고, 망인이 채무로 인해 부친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정기적인 생계비 지원에 해당함을 주장

쟁점

망인과 청구인의 생계유지, 즉 주거를 달리하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망인의 예금거래증명서에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의 은행에서 일정액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인출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부친의 입출금거래내역서상 일정 금액의 거래내역은 있으나 해당 사실이 망인이 청구인들에게 정기적인 생계비를 지원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 2

청구인이 망인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생계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은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인 망인의 배우자가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주소지가 상이하고, 부양가족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청구인과 망인이 부양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은 청구인이 망인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이 아닌 점, 상당기간 주소지를 달리한 점 등을 들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주소지만 상이했을 뿐 매달 왕래가 있었고 망인의 장례식도 청구인이 치렀으며 부양가족 연금액은 금액이 작아 상관하지 않았다고 주장

쟁점

망인의 노령연금에 청구인이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망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이 아니었던 점, 주소지가 상이한 점 등이 법 시행령의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함

사례 3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였거나 주거의 형편 등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 하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부친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인 망인의 부친이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청구인과 생계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이 이혼을 한 후 청구인의 옆집에 거주하였고, 망인이 아프기 전에는 청구인에게 생계비를 통장으로 지원하였으나 망인이 투병생활을 하며 경황이 없어 생계비를 통장으로 지원하지 않고 현금 및 망인의 카드로 지원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

쟁점

망인과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시행령 별표1

결정

망인과 청구인은 주거를 같이하다가 망인의 혼인으로 주거를 달리하게 되었고 망인 이혼 후에 종전 망인이 거주하던 집인 청구인의 옆집으로 이사를 왔으므로 명백히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혼 후 종전 주소지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주거의 형편 등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음

또한 망인 발병 전까지 망인이 청구인에게 정기적인 생계비를 지원한 점을 고려해 유족연금을 지급함

사례 4 이혼 소송 확정 전 망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혼 관계임을 인정하고, 명백하게 생계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은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인 망인의 배우자가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이혼소송 제기 등을 사유로 청구인과 부양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의 외도를 인지하자 폭력이 시작되었고 폭력을 견디지 못하여 쉼터 등에서 거주하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

쟁점

이혼소송 선고 후 확정 전 망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이혼소송의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해당 판결문상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망인이 이혼소송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혼소송 선고 후 확정 전 망인이 사망하여 해당 판결은 유효한 판결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과 망인은 법률상 배우자이며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판결문상에 일정시점부터 망인 사망시까지 별거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망인을 가정폭력으로 두차례 신고한 점, 망인의 폭력에 대해 관련 기관에 네차례 상담한 점, 가정폭력 보호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불가피하게 별거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함

사례 5

주소지가 상이하고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하였으나 배우자의 생계유지를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주소지가 상이하고,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하였음을 사유로 청구인이 망인과 부양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과 청구인은 집안의 경조사와 명절에 교류가 있었으며 망인이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 생계유지가 있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

쟁점

주소지가 상이한 사실,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한 사실이 법 시행령의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청구인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신분관계가 인정되고, 공단의 사실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외손자를 돌보느라 거주지가 상이했다고 진술하는 점, 다른 가족들도 청구인이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망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과 청구인 사이에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없는 경우는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함

사례 6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여 망인의 모친이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여 망인의 모친이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의 모친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사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망인의 모친에게 유족연금 미지급급여를 지급함

청구인의 주장

아들, 며느리와 생활하던 중 아들이 사망하고 14일 후에는 며느리가 사망하여 며느리가 아들의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기 전 사망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쟁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법 시행령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국민연금법에 유족연금은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최우선 순위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있으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였는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가 아닌 망인의 모친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 7	망인의 모친이 망인과 선 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망인의 배우자가 부양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망인의 모친이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의 배우자가 선 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임을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과 배우자는 1999년부터 거주지가 달랐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두차례 제기하는 등 생계유지가 없었으며, 망인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청구인에게 병원비 등을 송금하며 생계를 지원하였으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망인과 배우자는 취업상 비동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거주지 인근 주민들이 주말부부로 왕래한 사실을 증언한 점, 배우자가 망인 카드로 대출받아 현재도 상환 중인 통장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이었다고 하나 가출, 실종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망인의 모친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 8

주거의 형편 등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모친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망인의 모친이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망인과 생계 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이 원룸에 거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 청구인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은 병원진료로 인해 다른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이를 주거의 형편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

망인과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청구인과 망인이 기존에 주거를 같이한 건물은 십팔평이며 방이 3개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다른 자녀와 손자녀가 주거를 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망인을 포함한 네명이 함께 계속 거주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점, 망인이 동 주소지에서 전출해 사망할 때까지 거주한 주소가 약 1.4킬로미터 떨어진 인근이었던 점,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주소지는 등기부등본상 여섯평 정도의 원룸이었고 청구인은 혼인한 다른 자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두 주소지 모두 망인과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망인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주거를 같이 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주거의 협소함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거를 같이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청구인과 2년 이상 주거를 같이 하였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망인과 청구인은 주거의 형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모친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

5 기타

사례 1

환수금 독촉고지서 발송 지연을 이유로 연체금의 일부 감액을 인정한 사례 **일부인용**

처분내용

공단은 장애연금수급자인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기지급된 장애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결정함
공단은 청구인에게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이 납부되지 않자 연체금 부과를 결정하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공단에 환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함

청구인의 주장

장애연금액의 2분의 1이 환수결정되어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에서 충당된다는 안내는 받았으나 연체금에 대한 안내는 없었으므로 연체금 부과 취소를 주장

쟁점

독촉고지서 발송지연을 이유로 부과된 연체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7조 급여의 환수, 제57조의2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법 제97조 연체금,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시행령 제41조 환수금의 고지 등

결정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향후 연체금 발생 및 체납처분 집행의 법적 효력에 있어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 경과 후 익월 5일까지 환수금의 독촉고지를 발송하고 있음

공단이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후 청구인이 잔여 환수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는데, 공단이 업무처리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독촉고지서의 발송기한을 경과한 후에 독촉고지서가 발송되어 독촉고지서의 발송 지연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연체금 일부 증액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독촉고지서 발송이 지연된 날부터 청구인이 환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날까지 부과된 연체금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 2

환수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판단해 환수금 결정을 취소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후 공단이 청구인의 가입기간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가입기간을 산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당시 청구인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청구인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취소하고 지급한 반환일시금의 환수를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의 안내대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수급하였는데 이제와서 공단의 착오를 이유로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환수한다는 것은 부당함

쟁점

공단의 전산처리 착오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7조 급여의 환수, 법 제77조 반환일시금

결정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혹한지, 환수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사정을 살펴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처분하여야 할 것임

반환일시금 취소사유가 공단 전산처리 착오로 발생하여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반환일시금 환수금액과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공단이 환수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환수금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 3 연계신청 당시 수급연령에 대해 공단이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계취소를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타공적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공단에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공적연금 연계를 결정하고 통지하였음. 이후 청구인은 공적연금 연계 취하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공적연금 연계신청 당시 수급연도가 빠른 연금에 맞춰진다는 안내에 따라 연계신청을 하였는데 국민연금 개시연도가 65세로 변경되었고, 공단의 착오 안내로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연계신청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

쟁점

연계급여의 수급연령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사유로 연계 결정 및 통지된 자에게 연계신청 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계의 신청 등, 연계법 제16조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연계법 제23조 심사청구, 연계법 부칙 제3조 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결정

연계법 제정 당시 연금 간 이동자가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의 미납 외에는 취소의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에 공단은 연계 신청 결과통보서가 도달하기 전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계 신청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공단이 청구인에게 연계 해당 결정 및 통지서 도달 후 취소 불가하고 연금의 지급시기는 국민연금제도에 맞춰진다고 안내한 사실도 확인되는 바 공단의 착오안내를 주장하며 연계신청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례 4 지급사유발생일 중의 시간적 선, 후에 따라 중복급여의 조정의 적용을 달리해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탈퇴하면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자격 상실일인 2020년 11월 25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을 결정, 통지함. 이후 청구인이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배우자의 사망일인 2020년 11월 24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중복 급여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유족연금을 선택하자 미선택급여인 반환일시금을 사망 일시금 상당액으로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반환일시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수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2020년 11월 24일 낮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받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년 11월 24일 오후 6시에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것인데 반환일시금 일부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환수금 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지급사유발생일 중의 시간적 선후에 따라 중복급여의 조정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4조 연금지급 기간 및 지급시기, 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결정

청구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인 2020년 11월 25일이며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은 2020년 11월 24일이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에 2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였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최종보험료 납부일의 말일인 2020년 10월 31일로 변경하더라도 청구인은 2020년 11월 24일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지급연령도달전청구 사유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발생일은 청구일이므로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이 동일한 경우가 되는데, 반환일시금도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의 종류에 포함되며 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특정한 때를 기준으로 수급권이 달리 결정되지 않으며 지급사유발생일 중의 시간적 선후에 따라 그 수급권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 5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인 반환일시금 수급권에 대하여 사망일시금 상당액이 아닌 반환일시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청구인이 본인의 가입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과 배우자 사망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유족연금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은 유족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미선택급여인 반환일시금에 대하여 사망일시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사망일시금 상당액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인 청구인에게 사망일시금 상당액이 아닌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77조 반환일시금, 구법 제80조 사망일시금

결정

청구인에게 2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여 공단은 법 제56조에 따라 청구인이 선택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에 대하여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법 제5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급여대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급여수준은 국민연금제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지급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 6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공단은 청구인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기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을 결정한 후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액과의 정산 차액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충당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 근거는 아니며 공단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므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 시에도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산정 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제61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제63조 노령연금액,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50조 급여지급, 법 제51조 기본연금액, 법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

결정

국민연금법 조문 체계상 제51조 및 제52조는 연금액의 구성요소인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각 연금종별로 지급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구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 노령연금액, 제63조제2항 조기노령연금액, 제68조제1항 장애연금액 및 제74조제1항 유족연금액에서는 기본연금액 외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과 제64조제2항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서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는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및 부지급의 근거가 됨

따라서,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근거가 없는 연금급여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법적용이라고 판단됨

사례 7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기간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2020년 11월 배우자와의 출산크레딧 합의서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을 추가하는 수급권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였고, 공단은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을 소급 지급함 이후 청구인은 2021년 6월 부양가족연금 대상을 추가하는 수급권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공단은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의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2020년 11월 출산크레딧 합의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2020년 11월부터 역산하여 5년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급여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연금급여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처리한 공단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 급여지급, 법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 법 제115조 시효, 법 제121조 수급권변경 등에 관한 신고, 법 시행규칙 제52조 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결정

법 제50조 및 제121조에서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0년 11월에 수급권 내용변경 신고 시 자녀만을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신고하였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로 당연히 배우자도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더욱이 법 제115조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공단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상 명시되지 않은 지분권 개념을 도입하여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 공단의 처분이 청구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제3장 심사청구 장애연금

- 장애연금 -

1

장애정도

1-1

논의 장애

사례 1	진료기록지상 시력측정 추이 및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1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	--

처분내용

장애상병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해 제출된 검사결과,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양안 광각무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악화소견이 인정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

청구인의 주장

장애상병의 악화로 빛도 보이지 않으며 보호자 없이 전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절 논의 장애

결정

장애진단서상 두 눈의 시력이 광각무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지 및 소견서상 시력 저하로 시야검사가 불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망막 빛간섭단층촬영 검사상 확인되는 양안 망막 두께 등의 변화 상태, 시유발전위 검사상 양안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자가형광안저촬영 검사상 황반부 상태, 진료기록지상 시력이 일관적으로 광각무로 기재된 점, 질병의 진행 상태와 임상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1급에 해당됨

사례 2	가입 전 발생한 좌안 망막박리가 현재 눈의 장애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존장애 차감 없이 장애상병 양안 녹내장으로 장애정도를 인정한 사례 인용
-------------	---

처분내용

1. 장애상병 좌안 망막박리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
2. 장애상병 우안 녹내장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기존장애인 좌안 망막박리를 차감하여 등급외로 결정

청구인의 주장

1994년 대학병원에서 좌안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고, 좌안 망막박리 수술 후 나안시력이 0.6으로 측정되었으며, 현재 좌안 실명의 원인은 망막박리가 아닌 녹내장이므로 기존장애 차감 없이 장애등급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기존장애인 좌안 망막박리를 포함한 현재의 장애상태에서 1등급 하향하여 인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5.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절 눈의 장애

결정

1994년 좌안 망막박리 수술 후 시력이 0.5까지 회복되었고, 이후 망막박리의 재발이 없었음에도 좌안에 시력 저하가 발생하였으므로 좌안 시력저하의 주된 원인은 녹내장으로 인정됨. 따라서 양안 녹내장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는 기존장애에 대한 차감 없이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되고 청구일의 장애정도도 동일하게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례 3	악화된 시력 측정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장애상병 좌안 각막열상의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장애결정기준일 기준 장애정도를 등급외로 결정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장애상병 좌안 각막열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의 주장

2021년 7월 21일 측정된 최대교정시력 검사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추가 제출된 최대교정시력 검사자료를 인정하여 장애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절 눈의 장애

결정

2019년 11월 11일 좌안 각막열상 발생하여 같은 날 좌안 유리체 및 수정체 절제술, 막박피술, 각막열상 일차봉합술 등 시행하였고, 2020년 3월 6일 좌안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 기름 제거술, 막박피술 등 시행하였음. 2021년 6월 9일 제출된 소견서 및 심사청구서 추가 제출한 2021년 7월 21일 경과기록지상 좌안의 교정시력이 안전수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년 8월 31일 및 10월 19일 좌안 최대교정시력이 0.05로 측정된 이후 좌안의 시력을 저하시킬 만한 객관적인 악화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21년 5월 12일 및 청구일인 2021년 6월 10일 기준 장애정도는 국민연금 눈의 장애 최저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2 귀의 장애

사례 1	좌측 만성중이염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등급외로 판단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좌측 만성중이염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기존장애인 좌측 만성중이염을 포함한 현 장애상태의 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등급외로 결정

청구인의 주장

1989년 당시 중이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병원에서도 수술보다는 약물치료를 권유하였고, 업무수행에도 특별한 불편 없이 지냈으며, 중이염과는 관계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새로 발생하였으므로 기존장애와 장애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1등급 차감 결정을 취소하고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현 장애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등급외로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5. 장애의 중복조정, 제2장 제2절 귀의 장애

결정

1989년 6월 13일 병적기록표상 좌측 중이염 소견으로 보충역 처분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이후 제출된 2010년 10월 6일 청력검사상 양측 귀 난청이 확인되며, 2011년 3월 29일 의무기록지상 좌측 귀는 원래 잘 안 들렸고,

6개월 전부터 우측 귀도 안 들린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측정된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귀 36.6데시벨, 좌측 귀 51.6데시벨의 청력손실이 확인되는 점,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인 2010년 10월 6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2년 4월 7일 기준 장애정도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귀의 장애 최저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2020년 9월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상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상태로 청구일인 2020년 12월 8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기존장애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바 기존장애인 좌측 중이염의 장애상태를 포함한 현 장애상태의 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인정하면 등급외임

사례 2	최대어음명료도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을 하향하여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어음명료도를 제외한 모든 검사 결과는 3년 전보다 나빠졌고 담당 주치의의 진단 및 소견에도 청력이 나빠져서 보청기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인공와우 수술을 권한 상태인 점, 공단이 담당의사의 소견이나 기타 검사결과 수치는 고려하지 않고 어음명료도 수치만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하향한 것은 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2절 귀의 장애

결정

2012년 9월 3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초진 받은 이후 직전심사기준일인 2018년 3월 8일 기준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된 이력이 있음

2021년 5월 14일, 5월 25일, 6월 4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2021년 5월 25일 시행한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좋은 청력은 70데시벨 이상으로 확인되나 어음명료도는 44퍼센트, 48퍼센트, 52퍼센트로 평가되어 최대어음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바 정기직권재심일인 2021년 5월 31일 기준 장애 정도는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1-3 지체의 장애

사례 1	기 심사 이후 장애상태 악화를 인정할 만한 추가 뇌병변 발생 등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뇌경색의 장애악화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뇌경색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2급으로 결정

청구인의 주장

우측 팔다리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고, 간병인의 부축이 있어도 중심을 못 잡아 보행할 수 없으며, 대소변 가리기 불가, 인지저하 및 의사소통 불가능한 상태로 타인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 우측 팔다리의 강직과 떨림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2016년 5월 장애등급 2급으로 판정된 이후 추가 뇌경색 발생 등 뇌손상을 악화시킬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사지마비 소견서상 우측 상지의 근력이 1, 2등급, 하지의 근력이 0에서 3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년 8월 31일 기록지상 네발 지팡이를 이용하여 치료사의 보조하에 20미터 정도 보행 훈련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언어평가서상 실어증 지수가 2016년 5월 10일 16에서 2017년 11월 30일 25.4로 호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일인 2017년 10월 31일 기준 장애정도는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로 장애등급 2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 2

균형장애 및 자세 불안정을 고려하여 소뇌실조증의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소뇌실조증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의 주장

작년 12월 이후 혼자서 실외보행이 어려워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하고, 실내에서도 보행 보조기나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물 섭취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장애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보행이 가능하다고 결정내린 것은 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7년 2월 13일 기준 장애정도는 2017년 3월 진료기록지상 균형 장애 소견이 있으나, 객관적인 신경학적 결손의 악화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질병의 특성,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일인 2018년 2월 27일 기준 장애정도는 2017년 12월 추가 제출된 자료상 음식물 섭취 관련 장애정도는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조증과 관련된 양 하지의 미세한 위약과 보행 시 균형 장애, 자세 불안정이 관찰되며 일어서기와 계단오르내리기 등은 보조기구와 보호자의 도움이 중간 정도 이상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는바,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함

사례 3

파킨슨병척도검사상 보행점수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파킨슨 증후군의 장애정도를 4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파킨슨증후군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의 결정

청구인의 주장

파킨슨증후군 진단받고 몸 전체 떨림 및 어지러움으로 인해 술 취한 사람처럼 지그재그로 걷고, 엇박자 발디딤으로 넘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도움 없이는 정상 보행이 힘들며, 글쓰기, 목욕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2017년 6월 진료기록지상 어지러운 보행은 없다, 독립보행 가능, 우측에 약간의 서동증과 근강직으로 기재된 점, 질환의 특성 및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7년 10월 20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2018년 7월 추가 제출된 자료상 직립보행 시 균형 장애 관찰되고, 단독보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 5월 시행된 파킨슨병 척도 검사상 자세, 자세안정, 걸음걸이가 각각 2점으로, 걸음, 지난 1개월 동안 넘어짐의 빈도가 각각 3점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일인 2018년 5월 23일 기준 장애정도는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상태로 인정되는바 장애등급 4급에 해당됨

사례 4

족하수 상태를 고려하여 뇌경색의 완치일 기준 장애정도를 장애 등급 4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뇌경색의 완치일 기준 등급의 결정

청구인의 주장

1년 넘게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안전바가 있을 때만 안전하게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하며, 좌측에 있는 사물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왼쪽 팔다리가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곤 하여 식사 시에도 오른쪽에 있는 음식만 먹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사지 마비의 장애

결정

청구인은 2017년 9월 좌측 소뇌 경색과 우측 전두엽 부위 뇌내출혈 발생한 상태로 수정바텔지수 검사 결과가 2018년 3월에 40점에서 2018년 5월 89점으로 호전된 상태가 확인되고, 뇌졸중 상지기능검사상 우측 32점, 좌측 30점, 2018년 6월 진료기록지상 근경직 정도가 0으로 확인되나 2018년 5월 퇴원요약지 및 이후 평가지상 족하수가 있는 상태로 확인되는 점, 2018년 6월 도수근력검사상 좌측 하지 근력이 2, 3등급으로 평가된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치일인 2018년 9월 7일 기준 장애정도는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로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례 5	근전도 검사 및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 등을 고려하여 우측 발목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요천추부 척추협착증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척추 수술 후 발목관절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절룩거리며 보행하고 있고, 발목관절 및 엄지발가락을 치켜올리지 못하고 있으니 발목의 기능저하 상태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다리, 발가락의 장애, 척추의 장애

결정

2017년 2월 척추부 MRI상 요추 4-5번간, 요추 5번-천추간 협착증 등 진단 하에 2017년 2월 8일 요추 3번부터 천추까지 후방감압술 및 고정유합술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근전도검사상 좌측 요추 5번 신경근병증 및 천추 1번 신경근병증의 불완전 손상으로 확인된 점, 2018년 12월 19일 제출된 소견서상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의 4분의 1 이하로 감소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8년 8월 8일 및 청구일인 2018년 11월 5일 기준 장애정도는 좌측 다리의 발목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지 않고, 요추 제3번부터 천추간 골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요추부의 운동기능이 3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 총합하여 장애등급 4급임

사례 6

근전도 검사 및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능동운동범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 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장애등급을 상향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완치일 및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현재 양 수부가 횡문근 용해증 및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근육 및 정중, 척골 신경 손상이 있는 상태이므로 수동운동이 아닌 능동운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결정기준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장애의 중복조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팔, 손가락의 장애,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

결정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양측 정중 및 척골신경의 손상이 확인되고, 좌측 요골신경의 감각이상도 확인되며, 전기적 화상의 특성상 좌측 수부에 전원이 들어와서 우측으로 사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 화상 환자의 일반적인 예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능동운동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19년 4월 16일 추가 제출된 소견서상 확인되는 양측 수부의 능동 관절운동범위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상지의 경우 장애결정 기준일 기준 원처분과 동일한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되고, 좌측 상지의 경우도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되는바, 중복조정하면 장애등급 3급임

사례 7	상지기능평가 및 도수근력검사상 좌측 수부의 기능 제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뇌경색의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3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	--

처분내용

뇌경색의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뇌경색으로 인해 계단보행이 안되고 백미터 거리를 약 1시간 이상 걸어야 하며, 좌측 상지의 경우 운동기능을 상실하여 쓸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2018년 9월 24일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행한 뇌졸중 상지기능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좌측 손을 이용한 집기, 입방체 옮기기, 페그보드 영역은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된 점, 2019년 3월 29일 재활평가지상 수정바텔지수 67점으로, 지팡이 보행하며, 경직증상으로 인해 2019년 6월 12일 좌측 상지 보톡스 주입한 점, 2019년 10월 11일 경과기록지상 상지거상 가능 수지굴신 불가, 절름보행 가능으로 기재된 점, 2020년 6월 10일 도수근력검사상 좌측 상하지 근력정도, 수정바텔지수결과, 뇌영상 자료상 뇌병변 양상과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완치일인 2019년 9월 25일 및 청구일인 2020년 6월 30일 기준 장애정도는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함

사례 8	산재에서 인정받은 장애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의 주장

근로복지공단에서 동요정도 10밀리미터 이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 검사하였으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다리, 발가락의 장애

결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무릎관절의 동요정도 측정은 환측의 동요정도에서 건측의 동요정도를 차감하여 결정하는데, 2020년 11월 스트레스뷰 자료상 우측 무릎에 7.5밀리미터, 좌측 무릎에 16.1밀리미터의 동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환측인 좌측의 동요정도에서 건측인 우측의 동요정도를 차감하여 결정하면 좌측 무릎관절은 8.5밀리미터의 후방동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20년 11월 14일 및 청구일인 2021년 1월 6일 현재 장애정도는 등급외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은 그 입법목적 및 취지를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의 체계 및 판정시기, 판정기준도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의 대상은 아니며,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사례 9

추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우측 골반골절 등의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우측 골반골절 등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의 결정

청구인의 주장

2021년 2월 17일 장애정도 평가서상 우측 고관절 부위에 이소성 골화가 발생하여 우측 고관절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26일 공단에서 시행한 직접진단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추가로 2021년 5월 26일 작성한 소견서와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니 이를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다리, 발가락의 장애

결정

2019년 8월 12일 우측 골반골절로 인해 이소성골화증 발생하여 우측 고관절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이며, 이후 화골성 근염이 일부 진행하고 있고 위치상 제거가 어려운 곳에 있는 상태이며, 영상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고관절 굴곡과 신전운동의 제한은 요천추부의 보상으로 측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한 2021년 5월 6일 CT 검사에서도 이전에 비해 이소성골화증의 진행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21년 2월 13일 기준 장애정도는 고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자료 인정되어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됨

사례 10	우측 상지의 근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뇌출혈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을 하향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뇌출혈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결정

청구인의 주장

이전과 비교해 장애상태가 호전된 사실이 없고, 우측 상지를 이용해 손가락조차 들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을 3급으로 하향한 결과는 납득 할 수 없으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2016년도에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발생한 상태로, 우측 상지를 이용한 일상동작 수행을 기능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점, 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전 심사일 기준 장애등급 2급으로 결정된 이력이 있음

이후 제출된 자료상 2018년 12월 도수근력검사에서 우측 어깨 근력이 3등급으로 향상된 점, 2019년 5월 13일 수정바텔지수 결과 73점으로 확인된 점, 2021년 3월 3일 외래경과기록지상 단지팡이 이용하여 실내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기재된 점, 2021년 4월 발행된 소견서상 도수근력검사 결과 우측 상지의 근력이 1에서 3등급으로 확인되는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정기직권재심일인 2021년 4월 30일 기준 장애정도는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애등급 3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1-4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사례 1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우울증의 증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를 동일등급으로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우울증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

청구인의 주장

2017년 심사 이후 각종 검사에서 입원이 필요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으나 사회 공포증 등으로 외출하기가 두려워 방안에만 있으며, 다른 상병으로 진단된 자료를 추가 제출하니 이를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결정

청구인은 현재 우울증보다 중한 다른 상병인 조현형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이상증상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되던 상병으로 2017년도 및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새롭게 추가된 상병은 아님. 제출된 최근 1년 동안의 기록지상 지속적으로 우울, 불안, 분노,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은 있으나, 개인위생, 식사관리 등 일상생활 기능의 퇴행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약물 투약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전심사 기준시점인 2017년 10월과 비교하여 현재 장애상태가 유의미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일인 2019년 9월 24일 기준 장애정도는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됨

사례 2

심사청구 시 추가 확보한 자료상 확인되는 치매의 질병 진행 양상 등을 고려하여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상향을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치매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3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8월 중순부터 현저히 병이 악화되었고, 이상행동 증상과 이상심리 증상 등이 동반되어 집에서는 보호할 수 없어 2018년 11월 17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현재 입원 중인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결정

2018년 8월 17일 MMSE 검사상 16점, CDR 1점, GDS 5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한 자료상 2018년 11월 17일부터 입원 중으로 확인되며, 2018년 11월 17일 MMSE 검사상 7점, CDR 3점으로 평가된 점, 2018년 11월 26일 횡설수설하면서 대소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며, 인지기능 저하가 심하다고 기재된 점, 2018년 12월 4일, 2018년 12월 5일 자발적인 일상생활관리 및 위생관리가 잘 안된다고 기재된 점, 2018년 12월 20일 대변을 실수하는 등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기재된 점, 이후 기록지상 이상행동장애가 동반된 인지장애의 악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악화 청구일인 2018년 11월 1일 기준 장애정도는 중증 치매상태로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불능 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로 인정되므로 장애등급 2급으로 판단함

1-5 신장의 장애

사례	<p>혈액투석 후 3개월 경과 전 신장이식을 시행한 상태를 고려하여 만성신부전의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만성신부전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이식 후 장애 4급 수급권자로 지내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크레아티닌 수치가 4.0 이상으로 유지되다가 재이식에 이르렀으니 신장기능 수치가 안 좋았던 시점은 장애등급 3급으로, 이식 후에는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8절 신장의 장애

결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1년 6월 17일 신장이식 수술 후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면역거부반응으로 2019년 7월 및 11월 혈청 크레아티닌이 2.99, 4.09로 악화되었으며, 2020년 1월 9일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나 2020년 3월 18일까지만 시행한 점, 2020년 3월 20일 신장이식술 시행하였고 이후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2020년 1월 9일 혈액투석 시작 후 3개월 경과되기 전에 이식 수술을 하였으므로 완치일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일인 2020년 4월 28일 기준 신장을 이식 받은 자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4급임

1-6 혈액·조혈기의 장애

사례

수혈 주기를 고려한 혈액검사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골수이형성증의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2급으로 상향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골수이형성증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3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골수이형성증으로 1, 2개월을 주기로 수혈을 받고 있었으며,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수혈주기가 3, 4주로 단축되었고, 이로 인해 장애심사기준일에 혈색소량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이고, 주치의 또한 혈색소량을 소견서에 4.0 미만으로 표기하였으니 이를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0절 혈액·조혈기의 장애

결정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은 이전 장애심사기준일 이후 골수이형성증에 대한 골수이식, 면역억제 치료, 표적항암제 등과 같은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대증요법인 수혈만 받은 상태로 확인되는바 의학적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호전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의학적으로 조혈기능의 최소 유지를 위하여 혈색소량이 7.0 미만으로 수혈을 하는 경우, 혈색소량이 상승되어 실제 상태보다 장애상태가 호전된 상태로 평가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7년 혈색소량은 2017년 4월 26일 5.7, 2017년 5월 31일 6.5, 2017년 8월 7일 6.7, 2017년 9월 4일 5.6이고,

2018년 혈색소량은 2018년 7월 31일 6.6, 2018년 8월 21일 7.6, 2018년 9월 18일 7.4, 2018년 10월 23일 7.1, 2018년 11월 20일 7.1로 기록되었으나, 2017년 수혈 주기는 한두달이고 2018년 수혈주기는 3, 4주인 점을 고려할 때, 장애정도를 호전으로 볼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혈액검사상의 혈색소량의 상승은 장애상태의 호전이기보다는 규칙적인 수혈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인정되는 점, 또한 3, 4주 주기로 적혈구 수혈을 통하여, 혈색소량 7.0을 유지하는 자로 수혈주기와 수혈 종류를 고려하고, 2019년 2월 27일 추가 제출된 주치의 소견서상 적혈구 수혈을 통해 혈색소량이 7.0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기록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혈색소량은 6.0 미만으로 판단됨

따라서, 혈색소 및 혈소판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심사기준일인 2018년 11월 30일의 장애정도를 판단하면, 앞서 수혈주기를 고려한 혈색소량은 6.0 미만이고, 혈소판수는 2018년 7월 31일 1.3만, 2018년 8월 21일 1.3만, 2018년 9월 18일 2.4만, 2018년 10월 23일 1.6만, 2018년 11월 20일 1.4만으로 대다수의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혈소판수 2만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조혈기 중앙군의 혈액검사성적 지표 2란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고, 진료기록지상의 일반상태는 3 이상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기존 장애등급과 동일한 장애등급 2급으로 판단됨

1-7 안면의 장애

사례

안면부의 변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면부 화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4급, 청구일 기준 등급외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안면부 화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4급,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7급 12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5급 1호로 결정되었는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2절 안면의 장애

결정

2014년 12월 23일 사고로 인하여 안면장애 발생한 상태로, 2015년 및 2017년 안면부 사진상 확인되는 안면장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는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변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고,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사고 후 2019년까지 확인되는 피부이식술 및 레이저 시술, 2020년 3월 안면부 사진상 확인되는 안면장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영구적으로 뚜렷하게 눈에 띄는 정도의 면상반흔, 조직의 비후나 함몰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급외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은 그 입법목적 및 취지를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의 체계 및 판정시기, 판정기준도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의 대상은 아니며,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1-8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사례 1	좌측 유방암과 우측 유방암을 별개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하여 등급외 및 결정보류로 결정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우측 유방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좌측 유방암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로 결정 보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담당 주치의도 양측에 생긴 유방암이 전이인지 새로 발생한 암인지
확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이로 인정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우측 유방암과 좌측 유방암을 별개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한 공단의 처분이 타
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 고형암의 장애

결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새로운 암 발생이 명백한 경우의 초진일은 새로 발
생한 암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하는바, 청구인은 2016년 5월
우측 유방암 진단, 2018년 3월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2018년 4월 병리
검사결과지상 양측 유방암 모두 제1병기로 확인되고, 제출된 자료상 다른 부
위 등에 재발 흔적이 없으며, 두번의 수술 이후 시행한 항암치료가 보조적 항
암요법에 합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원발암으로 판단되고, 치료경과상
재발, 전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우측 유방암의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
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좌측 유방암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이
미도래하였으므로 결정을 보류함이 타당함

사례 2	전이암을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발암의 초진일 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로 판단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신장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결정
 - 청구 없이 사망하여 사망시점의 장애정도는 판단하지 않음

청구인의 주장

망인은 2004년 8월 신장암 진단받고 신장절제술 후 완치되었으며, 2016년에
 췌장과 폐로 전이되어 수술 및 치료 중 사망하였으므로 전이암의 초진일인
 2016년 1, 2월경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쟁점

신장암이 2016년도에 췌장과 폐로 전이된 상태를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 고형암의 장애

결정

장애심사규정상 암이 전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을 원발부위 암으로 인정하고, 초진일을 원발부위 암 또는 전이암 중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함

2004년 신장암 진단 후 2004년 8월 신장절제술 시행하였고, 2016년 1월 췌장
 전이된 경우로 2016년 1월에서 3월까지 영상 검사상 신장암의 재발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6년 6월 조직검사상 최초 신장암과 동일한 암으로 확인된바 2016년
 1월 발생한 췌장암을 새로 발생한 암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장애판정기
 준일은 신장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인 2006년 2월로 판단되며 장애
 정도는 영상검사 결과 전이 또는 재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급외임

사례 3	좌측 유방암 치료 후 다시 좌측 유방암이 발생하였고 이를 재발암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	--

처분내용

첫번째 좌측 유방암의 초진일인 2011년 2월 9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2년 8월 10일 및 청구일인 2019년 5월 10일 기준 등급외 결정
 두번째 좌측 유방암은 초진일인 2019년 2월 11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로 결정보류

청구인의 주장

2011년 2월 9일 원발암 치료를 시작해 5년 동안 6개월마다 추적관찰을 하였고,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년마다 추적관찰을 하던 중 2019년 2월 11일 원발암과 같은 위치에 같은 성격의 암이 발생하여 재발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다시 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2019년 2월 11일 진단받은 좌측 유방암을 새로운 암으로 인정하여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 고형암의 장애

결정

재발암이란 잔여암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 후 잔여암이 다시 발견된 경우를 말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1년 2월 좌측 침윤성 유관암으로 진단된 이후 2011년 6월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시행하였고,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방사선치료 후 경과관찰 하던 중 2019년 2월 동일부위에 좌측 침윤성 유관암 진단되어 광범위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조직검사상 2011년과 2019년에 발생한 좌측 유방암은 모두 침윤성 유관암으로 확인되고, 면역화학검사상 ER, PR 등의 검사가 음성으로 동일한바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1년 2월에 발생한 좌측 유방암이 2019년 2월에 재발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례 4 잔존암이 있으나 치료경과를 고려하여 폐암의 청구일 기준 장애 정도를 등급외로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폐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등급 3급,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의 주장

2014년 폐암 발병 후 감마나이프 수술 및 항암치료 시행하였고, 2018년 정기 검사에서 동일부위에 다시 종양이 발견되어 3차 수술을 하였으며, 이후 검사에서 사이즈가 커졌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감마나이프 수술 특성상 개인차가 커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으로 종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3급 판정시점과 같은 상태라고 판단되는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 고형암의 장애

결정

2014년 9월 폐암 진단받고 2014년 10월 폐절제술 시행 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항암치료 시행하였으며, 2015년 11월 1차 감마나이프 수술 후 2015년 11월 뇌전이 발생하여 2016년 4월 2차 감마나이프 수술 시행한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6년 3월 20일 기준 장애정도는 전이암으로 수술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장애등급 3급이며, 청구일인 2020년 4월 20일 기준 장애정도는 2019년 10월, 2020년 4월 추적 관찰한 영상검사 및 진료기록지상 현재까지 전이 또는 재발소견 없이 2019년 10월 종양반응평가 결과 안정병변 상태로 경과 관찰 중인 점, 2015년 2월 항암치료 종료한 점, 2018년 3월 감마나이프 수술 최종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암요법 및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또는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5	<p>항암치료 중은 아니나 질병의 진행 정도 및 약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장암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2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p>
-------------	--

처분내용

대장암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3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자궁과 골반, 복막, 폐까지 전이되어 더 이상 항암효과 및 수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었고,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하는 론서프는 막대한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약물이며, 청구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항암치료를 안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하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 고형암의 장애

결정

2015년 5월 간전이를 동반한 대장암 진단되어 2020년 1월까지 여러 항암화학요법 시행하였고, 2020년 4월 22일 복부, 골반 CT 검사상 간 전이 증가소견이 확인되는 상태로 2020년 4월 27일 외래경과기록지상 론서프에 대해서 상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론서프의 경우 전이성 대장암에 폴피리, 폴폭스 등의 항암치료가 실패한 환자한테 3차 치료로 사용하는 약제이며, 2020년 7월 19일 복부, 골반 CT상 이전보다 전이 부위가 더 증가된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3차 항암제는 쓰고 있지는 않지만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정기직권재심일인 2020년 7월 31일 기준 장애정도는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2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 6

동일한 항암요법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 등을 고려하여 폐암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을 하향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폐암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3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이전에 비해서 암이 나아진 것도 없고 현재 보호자 없이는 생활이 안되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 고형암의 장애

결정

2005년도 폐암으로 진단된 이후 다발성 전이 등으로 2018년 10월 31일부터 로라티닙 항암화학요법 시행 중인 상태로 직전심사기준일 기준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2급으로 결정된 이력이 있음

이후 2021년 2월 17일까지의 외래 경과기록지상 동일한 항암요법 시행 중이며, 추적 관찰한 MRI, CT, PET 검사 결과 질병의 재발이나 진행소견은 없는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기직권재심일인 2021년 2월 28일 기준 장애정도는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애등급 3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2-1

눈의 장애

사례 1

초진기록, 치료경과 등에 근거하여 양안 녹내장의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양안 녹내장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0년도에는 정상적인 눈으로 한두 번 병원을 방문하였으므로 실제로 시력이 나빠지게 된 2014년도로 장애상병의 초진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및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1절 눈의 장애

결정

장애심사규정상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임. 2010년 1월 18일 내원하여 안압측정, 시신경유두입체검사 등을 시행하여 녹내장 의증으로 진단 후 녹내장 치료에 사용하는 잘라탄, 코슈 등의 점안액을 처방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녹내장 치료 이력이 확인되며, 2011년 4월 좌안 아래쪽 녹내장성 시야 결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기재된 점, 치료경과, 가입이력 등을 고려할 때 양안 녹내장의 초진일은 2010년 1월 18일로 판단되며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례 2	국민연금 가입 전 진료기록상 이미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로 인정되는 시력이 확인되어 가입 중 발생이 인정 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양안 망막색소병증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01년 병적기록부상 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5년경 그 증상이 심화되어 안과를 찾은 때를 발병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절 눈의 장애

결정

제출된 자료상 양안의 망막변성은 망막색소변성으로 확인되는 점, 2001년 5월 2일 양안 교정시력이 각각 0.3으로 측정되었고, 2001년 5월 4일 안전위도 및 망막전위도 검사상 양안 광범위한 색소 변화 확인되어 양안 망막색소변성증 진단되었으며, 주치의 소견서상 교정시력 양안 0.3, 망막전위도 검사상 시세포 기능 감소, 지속적인 통원치료 및 정기관찰 요함으로 기재된 점, 2001년 8월 9일 망막색소변성증으로 교정시력 양안 0.3으로 각각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심사규정 인정 요령에 따라 청구인이 최초 가입한 2006년 6월 1일 전에 망막색소변성증의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로 확인되므로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

2-2 귀의 장애

사례	갑자기 청력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서서히 장애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양측 난청의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양측 난청으로 2001년 발행된 장애진단서상 장애정도가 양측 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병의 특성, 가입내역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갑자기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2절 귀의 장애

결정

국민연금 가입 이후 갑작스런 청력저하를 일으킬만한 질환이나 사고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2001년 7월 12일 발행된 장애진단서상 장애발생시기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애정도가 양측 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각장애 최초 초진일에 동 장애를 영구로 판단한 점 등과 청각 관련 상병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상병인 양측 난청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난청이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

2-3 지체의 장애

사례 1 근이영양증의 초진일을 진료기록지상 증상이 확인되는 때로 판단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제출된 2002년 6월 진료기록지상 20세 이후에 증상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2002년도에 주치의와 상담한 내용을 이유로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및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상 신체검사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1987년 입영하여 1990년 만기전역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2년 6월 14일 익상견갑 증상을 주호소로 내원하였고, 당시 양측 어깨 외전 근력이 3등급으로 확인되어 시행한 2002년 6월 26일 근전도검사상 근육병 의증, 양측 장흉신경과 부척수신경 마비가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2년 7월 장애인복지법상 근이양증, 양상지 견관절부위 근위약으로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이 되었고, 이후 근전도검사 결과 안면견갑상완근이영양증으로 진단된 점, 치료경과, 가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20세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는 진술은 해당 증상이 근이영양증의 증상이었는지 여부 및 발생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이영양증의 초진일을 2002년 6월 14일로 인정하여,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 2 진료기록지상 발병시기 등에 근거하여 경추5-6-7번 추간판탈출증 등이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경추5,6,7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국민연금 가입 중 증상이 발생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침 등의 치료를 계속하다 결국 디스크라고 들었으므로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척추의 장애

결정

2011년 9월 6일 목 통증, 팔 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여 경추부 디스크로 진단되었고, 방사선사진상 경추 5, 6번 디스크와 추간공이 좁아져 있다고 기재된 점, 2014년 2월 기록지상 발병시기는 2011년 9월로 경부통, 우측 견갑부통, 우측 상지통 등 있으며 2011년 9월 자고나니 증상 발생했다고 기재된 점, 2009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의무기록지상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9월 6일 진료기록은 해당 장애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초진일은 2011년 9월 6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해당상병의 발생이 청구인의 자격상실일인 2011년 8월 1일 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의학적인 근거자료는 없는 상태로 확인되는바,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2-4 정신·신경계통의 장애

사례

가입 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 병력 등에 근거하여 조현병이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조현병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조현병 최초 판정은 2010년 이후이고, 이전에는 조현병 증상 없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이 가능했으며, 조현병과 조울증은 전혀 다른 질병임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결정

1996년 5월 조현병 진단 하에 입원치료 받은 점, 1996년 임상심리평가에서 정신병적 혼란과 함께 매우 심한 인지기능저하, 지능지수 59로 확인된 점은 정신병적 상태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결과이고, 2003년 5월 재입원시 정신병력이 지속된 점은 청구인의 진단이 조현병 또는 조울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현병과 조울병의 초기 증상이 유사할 수 있어 구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1996년 조현병 진단 시부터 일부 단락기간 확인되나, 유사한 임상증상으로 2012년 양극성정동장애 동반한 분열형 정동장애로 진단한 점, 치료의 연속선상에서 현재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에 이르게 한 점, 치료경과 및 2003년 7월 3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2-5 호흡기의 장애

사례

초등학생 때의 진단명 등에 근거하여 결핵성 파괴폐가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결핵성파괴폐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어릴 적 늑막염을 앓고 약 45년이 지나는 동안 감기로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고 건강하게 지내왔는데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6절 호흡기의 장애

결정

의무기록상 초등학생 때 결핵성 늑막염 진단 후 치료받았다고 기재된 점, 병적증명서상 무기폐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점, 엑스레이 등 흉부영상 검사, 폐기능 검사 상에서도 결핵성 늑막염 후유증, 무기폐 소견이 확인되는 점, 무기폐의 경우 천천히 진행되어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장애진단서상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폐기능 검사 등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보기 어려워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음

2-6

심장의 장애

사례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가입 전 진료내용 등에 근거하여 아이젠멩거증후군의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아이젠멩거증후군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한 2005년 8월 24일로 초진일을 변경하여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7절 심장의 장애

결정

1985년 2월 6일 진료기록지상 심실중격결손으로 인한 아이젠멩거증후군 및 우심증이 확인되고,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진료기록지에서도 심실중격결손으로 인한 아이젠멩거증후군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1998년 6월 9일 장애검진서상 심실중격결손 및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한 심장장애 2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년 5월 22일 발행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상 원인 상병명에 심장중격의 기타 선천기형이 기재되어 있으며, 치료내용 및 장애상태에 아이젠멩거증후군으로 치료 중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애의 원인 상병은 아이젠멩거증후군이고, 초진일은 1985년 이전으로 판단되므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2-7 신장의 장애

사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에 근거하여 만성신부전이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만성신부전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국민연금 가입 중인 2006년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1로 확인되고, 여성은 혈청 크레아티닌의 정상범위가 0.47에서 0.79까지이므로 1.1은 비정상범위에 해당되니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및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8절 신장의 장애

결정

혈청 크레아티닌 정상 참고치가 0.7에서 1.4로, 2006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1에서 1.4로 정상소견이었다가, 2010년 2월 11일, 2010년 3월 23일, 2010년 4월 14일, 2010년 5월 12일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모두 비정상 범주로 확인되고, 이후 신장 이식 전까지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어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 범주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2회 중 1회에 해당하는 때로 확인되는 2010년 2월 11일로 인정되고, 2008년 9월 상실된 청구인의 가입이력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

2-8 간의 장애

사례	간경변의 초진일이 속한 가입기간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간경변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초진일 해당 기간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2017년 12월 반납하여 가입기간이 복원되었으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9절 간의 장애

결정

1998년 5월 23일 기록지상 7년 전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간경변을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중인 점, 2018년 1월 식도정맥류 확인 후 2018년 2월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 시행하고 2018년 4월 간이식 수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염에 의해 간경변으로 진행된 것이며,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과 간이식 또한 이로 인한 치료과정으로 판단되고, 기초질환으로 간염이 있던 자가 간경변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의 주된 원인 상병을 간경변으로 보고, 간경변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하는 바, 초진일은 1998년 5월 23일이고, 초진일이 속하는 가입기간에 대해 이미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2-9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사례

직장암의 임상증상 발현시점 등에 근거하여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직장암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타 보험 암 특약으로 1998년 11월에 가입하여 직장암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 가입 당시 검사상 이상이 없었으므로 암 특약에 가입이 가능했고, 1999년 5월 13일 초진 당시 배우자가 임신을 할 정도로 초진일 이전에 건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이 타당함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 고형암의 장애

결정

1, 2년 전부터 발생한 항문출혈 및 2주 전 발생한 항문 통증 증상으로 별 치료 없이 지내다가 1999년 5월 19일 외래 통해 수술 권유받고 입원하여 1999년 5월 21일 직장절제술 후 조직검사상 직장선암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수술 직전인 1999년 5월 19일 내진검사상 종양 크기가 이미 3 곱하기 3 센티미터 크기인 점, 직장주변부 림프절 침범이 확인되는 점, 1999년 4월 1일 이후 직장암이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임상증상의 발현 시점과 상병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음

3

기타

3-1

완치인정

사례 1

대장아절제술 및 하트만씨 수술을 영구적인 장루로 인정하여 허혈성대장염의 완치를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허혈성대장염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미경과하여 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의 주장

허혈성 대장염을 원인으로 2017년 8월 6일 장루수술을 하였고, 주치의 또한 복원이 어려운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였는바, 영구장애로 인정하여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으로 장애등급을 판단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루상태를 복원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하여, 완치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1절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결정

2017년 8월 2일 괄약근 간 직장 절제술 및 대장 항문 문합술로 영구적인 수술을 시도하였다가, 2017년 8월 6일 대장아절제술 및 하트만씨 수술을 시행한 점, 수술 당시 우측 대장 및 소장이 움직이지 않았던 점, 장 부종과 괴사가 심한 점, 과거 충수절제술 등의 복부수술로 인해 장 유착이 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원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 8월 6일 시행한 장루수술을 영구적인 장루수술로 판단하여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 2

경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를 인정하여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판단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경수손상의 척추고정술로부터 6개월 경과한 완치일 기준 등급외, 사지마비의 장애는 초진일부터 1년 미경과하여 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의 주장

완전마비인 아시아 A임을 증명하는 근전도검사결과지, 소견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므로 초진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정도를 완전마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척수손상의 경우 완전손상은 손상부위 이하 감각 및 운동신경의 완전마비를 말하며, 이는 손상부위부터 척수 신경까지 모든 근력과 감각이 소실된 상태를 의미하며, 척수신경의 완전손상 여부는 항문 주위 감각과 항문괄약근 기능 유무로 판단함
 청구인은 2018년 8월 15일 추락으로 인한 경수손상 발생한 상태로 심사청구 시 추가 확보한 진료기록지상 지속적으로 아시아 A 상태로 기재된 점,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입퇴원기록지상 양측 하지근력은 0등급이며, 항문감각 및 자발적인 항문괄약근 수축은 없음으로 기재된 점, 추가 제출한 근전도검사상 양측 발목에서 후경골신경이 반응없음으로 확인되며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전마비 상태로 인정되는바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보아 장애등급 1급으로 인정함

사례 3	치료경과 및 사망진단서 등을 고려하여 뇌장암의 완치를 인정한 사례 인용
-------------	---

처분내용

뇌장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 사유로 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의 주장

2020년 1월 22일 의사소견서상 뇌장암 진단된 자로 복막전이로 여명 6개월 미만일 것으로 판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망인의 장애상태에 대하여 완치일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인정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5조 미지급급여, 제67조 장애연금의 지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 고형암의 장애

결정

2019년 5월 23일 뇌장암 확진되었으며, 2019년 6월 뇌장 MRI상 간과 대동맥 부위 림프절 전이되었으나, 항암치료 거부 후 자연치료와 통증관리 등 보존적 치료만 하였으므로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등급 1급으로 완치는 인정되지 않으나, 2020년 1월 뇌장 CT상 뇌장암의 크기가 증가하고, 양측 간엽과 대장 등에 새로운 전이성 병변으로 복막전이가 확인되어 전이암으로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로 판단되며, 2020년 1월 주치의 소견서상 상기 환자 2019년 5월 뇌장암 진단된 자로 간전이, 복막전이 등으로 여명이 6개월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추가로 제출한 2020년 6월 21일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심사규정상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망 전 망인이 장애연금을 청구한 청구일 기준으로 완치를 인정하여 장애등급 1급으로 인정함

사례 4

양안 비에티 결절망막병증의 치료경과 등에 근거하여 완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양안 비에티 결절망막병증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해당 상병은 호전 가능성이 없는 질환으로 진단서 및 장애연금 지급결정문에도 재심사예정일이 공란이고 장애인복지카드 유효기간도 제한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청구일 전 병명의 진단일을 완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인정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절 눈의 장애

결정

2003년 7월 30일 양안 맥락망막 변성으로 진단된 상태로 2005년 12월 30일 우안 시력 0.6, 좌안 시력 0.7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2020년 3월 11일 교정시력 우안 0.3, 좌안 안전수지로 측정된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임.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눈의 장애 완치일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거나, 안구적출술, 안구 내용물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치일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완치를 인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만 관련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 병명의 진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례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완치를 인정하지 않고,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미도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보류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 사유로 장애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의 주장

2013년 의사로부터 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완치란 질병을 완전히 고치거나 치료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는데, 난청의 경우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난청에 대한 진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인정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2절 귀의 장애

결정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초진일은 2019년 12월 24일로 인정되고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양측 청력이 60데시벨 이상인 상태로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경우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을 청구일 전 완치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현재 장애정도는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양측 귀 전농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이 도래하지 않아 장애등급 판정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 6

뇌출혈의 식물인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초진일부터 1년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장애등급 1급으로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뇌출혈의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1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뇌출혈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인간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이니 이를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식물인간 상태 인정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는 초진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시각, 촉각 등의 자극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이거나 자발적인 행동이 없거나,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5년 8월 25일 뇌출혈 발생하였고, 2015년 12월 31일 언어적 자극 등에 대해 눈을 뜬이라고 기재된 점, 2016년 3월 19일 언어반응이 증가했다고 기재된 점, 2016년 3월 20일 안녕하세요하면 반응이 확인되는 점, 2016년 6월 3일 언어결과기록지상 일상대화를 이해한다고 기재된 점, 2016년 6월 17일 기록상 6월 9일부터 언어치료를 시작한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는 식물인간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사례 7	의식상태 평가기록 등을 고려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의 식물인간 상태를 인정한 사례 인용
-------------	--

처분내용

저산소성 뇌손상의 진료기록지상 목가누기, 눈 깜박임 가능한 상태 등을 근거로 하여 식물인간 상태는 인정되지 않고, 초진일부터 1년 경과한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1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수상 직후부터 현재까지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눈 맞춤 및 목가눔도 안되는 상태로 주치의 소견서에도 식물인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약관에 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기준에 해당되는 상태이니 이를 고려하여 식물인간 상태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식물인간 상태 인정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2019년 11월 14일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었으며, 2019년 11월 뇌영상 자료상 광범위한 뇌손상이 확인되고, 2020년 3월 27일 의식상태 평가지상 시기능 및 의사소통 기능 0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0년 4월 기록지상 식물인간 상태로 기재된 점, 동월 시행한 평가지상 치료 시간 중 눈을 뜨고 있지만 시각적 고정 및 이동은 관찰되지 않음, 1단계 지시를 따르지 않음, 지시, 가이드, 데모로 유도하였으나 해당하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기재된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상 식물인간상태 인정요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바,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완치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1급으로 인정함

3-2 미납제한

사례 1	좌안 황반변성의 초진일을 변경하여 개정법을 적용하고 수급권을 인정한 사례 인용
-------------	--

처분내용

좌안 황반변성의 초진일인 2013년 3월 18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에 따른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2017년도에서야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았으니 초진일을 2013년이 아닌 2017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및 미납제한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85조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1절 눈의 장애

결정

2013년 3월 27일까지의 빛간섭단층촬영검사 소견 및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좌안 중심장액성 맥락망막병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중심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은 질환의 특성상 재발이 잦고, 호전되면 시력도 좋아지는 질병으로, 이후 호전되어 지내던 중 2017년 7월 5일 좌안 시력저하를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촬영한 빛간섭단층촬영 검사 결과 좌안 삼출성 황반변증이 확인되는바, 좌안 황반변성의 초진일은 2017년 7월 5일로 인정되고,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9년 1월 6일 기준 장애정도는 좌안 최대교정시력 안전수동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되며, 초진일 기준 개정법이 적용되어 납부요건 충족으로 장애연금 수급권 인정됨

사례 2

만성신부전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 적용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만성신부전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에 따른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당뇨가 있어 2011년 전부터 병원 내원하였던 적은 있으나, 신장내과 초진일은 몇 년 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2019년 6월에서야 만성 신부전으로 판정을 받고, 2019년 10월 31일 첫 투석을 시행하였으므로 초진일을 재심사하여 수급권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및 미납제한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85조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8절 신장의 장애

결정

혈액검사결과지상 2010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혈청 크레아티닌이 0.99에서 1.16으로 정상범위였다가, 2011년 10월 21일 혈청 크레아티닌이 1.48, 사구체여과율이 51.4로 비정상범주로 확인되며, 이후 혈액검사결과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 미만인 때로 최초 확인되는 2011년 10월 21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은 55개월이고,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총 52개월이므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인 107개월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에 해당함

사례 3	좌측 위팔 부위 절단에 대해 초진일 기준 구법 연금보험료 미납제한 및 개정법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좌측 위팔부위 절단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에 따른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2017년 1월부터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해주지 않았으며, 2017년 6월에 가입하고 2017년 7월이 되어서야 청구인의 국민연금보험료 5개월분, 2017년 2월부터 2017년 6월분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장애가 발생한 2017년 7월 4일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기간이었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기준 미납제한 및 납부요건 충족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85조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부칙 제4조제2항

결정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 요건, 18세 이상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③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6조에 외국인 가입자 등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11월 29일까지 있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구 국민연금법 제67조를 보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5조에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청구인의 경우 장애상병의 초진일인 2017년 7월 4일이 18세 생일인 2005년 11월 25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인 2052년 11월 24일 사이에 존재하므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였고,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기간이 2017년 2월 8일부터 2020년 7월 4일이므로 초진일이 국내 거주기간 내에 존재하여 외국인의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에서는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0개월이므로 가입대상기간인 31개월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또한, 구법을 적용할 경우 청구인은 최초 자격취득일인 2017년 1월 15일 이후에 초진일이 있으므로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로 인정되나 최초 연금보험료가 2017년 7월 10일에 납부되었으므로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적용대상이 되므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 4

조현병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 적용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조현병의 장애결정 기준일 기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나, 초진일 기준 미납 제한에 해당하여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공단에서 인정한 초진 시점인 2010년에는 단순 상담으로 병원에 들렀던 것이므로 초진일에 대해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및 미납제한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85조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결정

청구인의 경우 수년 전부터 지속되는 불안, 두통, 현훈 등의 다발성 신체증상을 주호소로 2010년 8월 17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고, 의료급여내역상 당시 상병명이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으로 확인되는 점, 이후 2010년 12월 불안, 불면 증상이 심해져 입원하였고, 2011년 5월 2일 외래 경과기록지상 환청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기재된 점, 이후 현재까지 해당 증상으로 간헐적 입원 치료 및 지속적인 외래 통원치료 중인 점, 해당 상병의 질환적 특성 및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조현병의 초진일은 2010년 8월 17일로 인정함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39개월이고,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20개월이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적용대상에 해당함

3-3 소멸시효

사례	우안 망막박리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애일시보상금 지분권을 소멸처분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우안 망막박리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장애일시보상금의 지분권이 청구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은 초진일을 1999년 10월 26일로 결정하였으나, A병원이나 B병원의 진료 기록이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C병원 전원 당시 복사해두었던 B병원의 진료 기록에 A병원의 진료기록 및 B병원에서 수술 전까지 시력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군 복무도 만기 제대하였으며 1996년 회사 기능직 입사 당시 신체검사서도 제출하였는바, 초진일은 1999년 10월 26일 B병원 진료일이 아니라 A병원이 맞으므로 다시 심사하여 줄 것과, 장애인등록 후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어 늦게 신청하였는데 이로 인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너무 억울함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을 1999년 10월 26일로 인정하여 장애일시보상금 지분권 소멸을 사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 급여지급, 제67조 장애연금 수급권자, 제71조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115조 시효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1절 눈의 장애

결정

국민연금법 제50조에 따라 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고, 제115조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법 제71조는 제68조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고 지분권에 대하여만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하여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된 연금액은 소멸 결정하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음

청구인의 경우 우안 망막박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1999년 10월 26일 B병원 초진기록지상 5년전 망막박리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우안 망막박리의 초진일은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1999년 10월 26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는 우안 안전수동, 좌안 1.2로 확인되므로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에 해당되어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되고,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2021년 6월 28일 교정시력이 우안 광각부, 좌안 1.2로 확인되는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됨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일시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앞서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법 제71조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각 월마다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일로부터 역으로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된 연금급여분에 해당하는 지분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인 2001년 4월 27일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연금급여분이 청구일인 2021년 7월 15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였고, 따라서 지분권 소멸을 사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또한, 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청이 늦어져 장애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3-4 기타

사례 1

골수이형성증의 주된 임상증상에 근거하여 초진일을 변경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골수이형성증의 초진일 기준 1년 6개월 미경과 사유로 장애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의 주장

골수이형성증의 초진일이 2019년 4월 24일로 결정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혈액 수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초진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혈액·조혈기의 장애

결정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적혈구 및 혈소판 등 감소 소견 보여, 2016년 7월 1일 범혈구감소증을 진단받았고, 정기적으로 진료받았음에도 혈구감소 지속되어 2019년 골수검사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확진 받았으나,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질환 특성상 무증상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질병이 진행하여 증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된 임상양상인 범혈구감소증이 시작된 시점을 초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장애상병 골수이형성증의 초진일은 혈액종양 내과 최초 진료일인 2016년 7월 1일로 인정됨

사례 2	정신과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우울증과 자살시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장애연금을 지급한 사례 인용
-------------	--

처분내용

저산소성 뇌손상의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나, 고의로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섬유근육통을 다년간 앓고 있어 다량의 진통제를 복용함에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극심한 전신통증 등을 호소해 왔고 이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우울증의 정도가 더욱 심해져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독거 및 음주 상태에서 자해행위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주장

쟁점

자살시도와 정신과적 질환과의 인과관계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제82조 급여의 제한

결정

사고 발생 이전 정신과 최초 진료기록은 2013년 8월 14일로 확인되며, 이후 다시 초조, 불면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았고, 2014년 6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정신과 진료 이력은 없는 상태이나, 추가 확보한 자료상 2008년부터 사고 발생 한달 전까지 약 8년간을 섬유근육통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섬유근육통의 경우 만성 통증 등으로 인해서 우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바, 2013년 1월 항우울제인 부스파 5 밀리그램, 익셀 12.5 밀리그램, 2014년 4월 부스파 20 밀리그램, 익셀 25 밀리그램, 2014년 10월 익셀캡슐 100 밀리그램으로 증량한 상태로 확인되고, 사고 직전 진료기록지상 우울감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섬유근육통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12월 당시 자살시도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

사례 3	추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간경변의 초진일이 변경되었으나, 구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간경변의 초진일인 2018년 12월 29일 기준 장애연금 납부요건 미충족으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2012년경 간경변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2013년부터 간경변 진단을 받았으니 그 전 기록을 추가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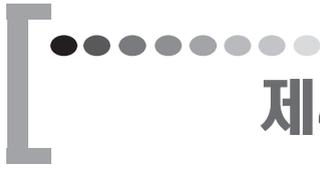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9절 간의 장애

결정

2012년 8월 진료기록상 소화불량 등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 결과 간의 비대증, 지방간 등 진단 하에 약물치료 시행하였고, 추가 제출한 2013년 10월 의무기록상 간경화 소견 침식되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영상자료 확인되지 않으며, 2015년 1월 영상자료상 간경화 소견 인정되지 않고, 추가로 제출한 2015년 4월 상복부 내시경검사상 식도정맥류 확인되며, 2015년 10월 19일 상복부 초음파검사상 간표면의 불규칙한 변화 등이 확인되는 점, 혈액검사 등 임상증상, 치료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간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간경화의 초진일은 초음파를 통해 확인된 2015년 10월 19일로 인정되고, 2014년 11월 11일 자격상실 후 2018년 5월 27일 재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



제4장 재심사청구



- 자격 관리 -

1 자격 관리

1-1 내용변경

사례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사업장 사용자를 사업자등록일로 소급하여 실제 사용자로 변경하였고, 건강·고용보험료 등의 부과가 취소되었음에도, 사업장 내용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업무지침으로 사용자 변경 기준을 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결정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급 내용변경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사용자 명의대여 관련 사용자 변경 자격변동일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근거로 사업장 소급 내용변경 불가 결정함

청구인 주장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일로 사용자를 실제 사용자로 변경하였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부과가 취소되었으므로 국민연금도 소급하여 사용자를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 내용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해야 함
 피청구인은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명의대여 관련 사용자 변경에 따른 자격변동일을 과세행정청의 부과취소일 또는 법원 판결확정일로 처리하므로 사용자 소급변경을 거부함

쟁 점

개인사업자 사용자의 명의가 대여된 경우 과세행정청의 사용자 변경일로 사업장 사용자 소급 변경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법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108조 심사청구, 제110조 재심사청구, 시행규칙 제14조, 제49조

재결 결과

피청구인은 개인사업장 사용자 명의대여 관련 사용자 변경에 따른 자격변동일, 즉 명의대여자에 대한 취득일과 상실일은 과세행정청의 부과취소일 또는 법원 판결 확정일로 하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내부 지침은 법규해석 통일성과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 지침의 해석 및 판단 기준을 수궁할 수 있는 경우 지침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

과세관청의 결정을 공단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근로자-공단 간 법률관계 등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 요구됨

따라서, 사업장 소급내용변경 신고 거부는 업무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년 8월 14일 선고 2014두38422판결

- 법원이 사후에 상위법령 자체를 해석하더라도 지침의 해석 및 판단 기준을 수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지침에 따라 처분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공단의 처분은 존중되어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9년 9월 5일 선고, 2018구합85136판결

-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대여를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자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를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1-2 추납보험료 납부취소

사례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몰랐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납부 과정에서 하자가 없었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및 수납이 법률에 따라 하자 없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추납보험료 납부취소 요청을 거부 결정함

청구인 주장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부분을 몰랐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국민연금제도는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

추납신청 시 청구인이 제출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추납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납보험료 납부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됨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및 수납이 법률에 따라 하자 없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 되었으므로 공단의 추납보험료 납부취소 거부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쟁 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알지 못한 상태로 신청 및 납부한 추납보험료의 납부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9조 지역가입자,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시행규칙 제62조

민법 제109조, 제111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재결 결과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일단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처분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법률관계가 형성됨

유효하게 형성된 행정처분을 향후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취소한다면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청구인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및 수납이 법률에 따라 하자 없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사례 2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이후 추납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인정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당시 가입자가 아니며, 65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청구인의 추후 납부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청구인 주장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후 추납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공단의 안내가 없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시 가입자가 아니며, 65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거부함

쟁 점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신청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서 가입자는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당시 가입자가 아니며,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연령이 65세를 경과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이 불가하므로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후 납부 신청이 불가함

또한 추후 납부 신청 및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요건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므로,

청구인이 해당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피청구인의 안내가 없었더라도 청구인에게만 추후 납부 신청 및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1-3 임의계속가입 자격 취득

사례

임의계속 가입 신청 또는 보류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음을 사유로 임의계속가입 인정을 주장하나, 60세 도달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임의계속가입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피청구인은 60세 도달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 불가를 결정함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 신청 또는 보류에 대한 안내를 했다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의계속가입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이후 청구하면 지급함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음

쟁 점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보류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함을 이유로 60세 도달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의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조 가입대상,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제77조 반환일시금, 법 부칙 제8조, 제8조의3

재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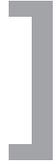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음

청구인은 가입 신청 당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이므로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자격취득이 불가함

또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요건은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피청구인의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만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함



제4장 재심사청구



- 급여 관리 -

2 급여 관리

1 노령연금

1-1 노령연금

사례 1	<p>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기간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로 정정된 생년월일로 인한 연금수령 기회의 일실을 주장하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 정정일 전날까지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자격상실일로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자격상실일을 노령연금 지급 사유발생일로 결정

청구인 주장

생년월일을 정정하였으나, 가입자 자격 유지로 인하여 정정된 생년월일을 지급 사유발생일로 한 연금 수급기회를 일실함

피청구인 주장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연금수령액이 감소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를 이유로 생년월일 정정일을 기준으로 정정일 전날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을 인정함

쟁 점

정정된 생년월일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 급여 지급, 제54조 연금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률 제8541호 법 부칙 제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록부의 기록절차, 제18조 등록부의 정정

주민등록법 제10조 신고사항, 제11조 신고의무자, 제13조 정정신고, 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재결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정 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소급 적용하게 되면 정정 전의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가입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에 따라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연금수령액이 감소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그 정정일까지 가입 이력은 유효한 것으로 봄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자격상실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사례 2	<p>직원의 안내 착오로 최종 연금보험료를 법정기한 경과 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담 이력에 안내 착오는 확인되지 않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체납된 연금보험료 납부로 수급요건이 최종 충족되어 같은 날을 지급사유발생일로 노령연금 지급 결정

청구인 주장

직원의 잘못된 유선 안내로 6월 연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6월 10일 통화내용을 확인하여 6월 노령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2020년 5월분 연금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기에 체납된 보험료납부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지급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쟁 점

체납보험료 납부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사유발생일

관련 법령

법 제50조 급여 지급, 제54조 연금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법률 제8541호 법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법 제54조제1항에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연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20년 5월분 연금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로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연금보험료 납부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함

국민연금은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임

상담 이력에 안내 착오는 확인되지 않고, 실령 보험료 납부기한에 대하여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만 법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음

사례 3	<p>추납기간 안내 착오로 연금 수급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착오한 점이 있더라도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로 노령연금 지급 사유발생일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 상실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노령연금 지급 결정

청구인 주장

추후 납부보험료 신청 당시 납부 가능 기간이 정확히 안내되었더라면 연금을 11개월 빨리 수령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노령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비록 공단이 착오 안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2021년 1월에 이르러서야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하여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쟁 점

추납기간 안내 착오를 사유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제50조 급여지급,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률 제8541호 법 부칙 제8조

구 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시행령 제62조

재결 결과

수급연령 도달일에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임의 계속가입자 탈퇴를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 상실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정하고 있고,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짐

비록 추납 가능 개월 수에 대해 착오 안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2021년 1월에 추가납부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 4	<p>주민등록번호 오기의 귀책이 본인에게 있지 않으므로 노령연금 지분권 소멸시효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주민등록번호 오기를 본인이 인지하였음도 지연 청구한 바 노령연금 지분권 소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나지 않는 기간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만 지급 결정

청구인 주장

2009년 노령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여 정정 후 청구하도록 청구서 반려됨

주민등록번호 착오 관리의 귀책 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분권이 소멸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멸된 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노령연금 청구 당시 주민등록번호 불일치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공단이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0일에 이르러서야 주민등록번호의 오기를 정정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함

청구인이 권리의 발생 여부를 알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권리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마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 점

주민등록번호 착오 관리의 귀책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음을 이유로 연금 지분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구 법 제50조 급여지급,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제115조 시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록부의 정정, 제104조 위법한 가족
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주민등록법 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제15조 주민
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되며 지분
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급여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나지 않은 연금급여액만을 소급
하여 지급함

청구인이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
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다른 법률
상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할 이유가 없음

사례 5	<p>지급사유발생일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하나, 연금은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령연금액 결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월액 지급 결정

청구인 주장

2020년 9월 10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이므로 국민연금 첫 수급일은 2020년 10월 10일이 되어야 하고, 법 제54조에 의해 연금은 10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하나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15일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포함해, 10월 25일 지급 시 45일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법 제54조제1항에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쟁 점

노령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 급여 지급,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률 제8541호 법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법 제54조제1항에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민연금법 제54조제2항에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월중에 생기면 소멸일이 속하는 달까지 한 달분의 연금액을 모두 지급하므로 연금을 일할로 계산된 노령연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2 조기노령연금

사례 1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하여 수급 중 공단의 안내 부족을 이유로 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상담 내역에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임을 사유로 미해당 결정

청구인 주장

조기노령연금 청구 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더라면 장애연금 청구를 하였을 것이므로 노령연금 지급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상담 내역에 조기 연금은 낮은 지급율로 평생 지급됨을 안내하고, 청구인이 괜찮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됨

설령 청구인이 해당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 국민적 효력을 가짐

쟁 점

공단의 안내 부족을 이유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 급여 지급,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률 제8541호 법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법 제50조에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1조제2항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1958년생의 경우 57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1958년생의 경우 62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 청구할 당시 평생 조기연금이 지급됨을 안내한 것이 확인됨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해당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사례 2	<p>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의 급여 외에 비고정 인센티브인 업무공헌 위로금을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른 근로소득을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득 있는 업무종사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정산금으로 결정

청구인 주장

2019년 12월 말일에 회사에서 업무공헌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비고정 인센티브 명목으로 삼백삼십만원을 지급하여 소득 상한 A값을 초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과세관청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 적용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금전이 발생하였다고 이를 임의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쟁 점

근로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비정기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구 법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3조 노령연금액, 제66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시행령 제45조, 법률 제8541호 법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있음

근로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금전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법 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음

2 분할연금

사례 1	<p>이혼 판결문에서 전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는 확인되나, 지급사유 발생일이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분할연금 산정대상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개정 법 시행 전인 경우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기간은 제외하고 분할연금이 지급된 월분부터 청구인의 노령연금액 변경을 결정

청구인 주장

전 배우자가 연금형성에 기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법률에서 정하였고,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쟁 점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는 경우 혼인기간에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시행령 제 45조의2, 법률 제8541호 법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혼인기간에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 제64조제1항의 시행일은 2018년 6월 20일이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은 2016년 8월 22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소할 수는 없음

관련 판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238, 2018년 4월 26일 선고

-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면서 법률혼 기간의 산정에 있어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혼인기간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대법원 2015년 5월 29일 선고 2014두35447 판결

- 개정법률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법원은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사례 2	<p>이혼조정조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었고 전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처분 취소를 주장하나, 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 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것만으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 청구 시 수급권 포기한 기간은 제외하고 수급하기로 한 월분부터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청구인 주장

조정조서에 전 배우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청구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청구인은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전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재산분할의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쟁 점

이혼조정조서상 재산 청산조항에 분할연금 수급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구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 부칙 제1조, 제2조, 법 부칙 제8조
 개정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법률 제15267호 법 부칙 제1조, 제2조

재결 결과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법 제64조의2에 특례를 두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인 2016년 12월 30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건은 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조항의 시행일인 2016년 12월 30일 전 발생 건으로 적용할 수 없음

법 제64조의2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

이혼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청구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 내용만으로 사회보험의 일환인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례 3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전에 이혼했으므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말 것과 이혼조정조서에 전 배우자가 위자료, 양육비 외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만 법 적용을 달리할 수 없고, 이혼조정조서에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 변경을 결정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수 결정

청구인 주장

1997년 12월 12일 이혼하였으며 전 배우자는 청구인에 대해 위자료, 양육비 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분할연금 조문이 199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말 것을 주장함

국민연금법이 2018년 6월 20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해당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일은 2020년 9월 20일로, 1997년 12월 12일 이혼조정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 제64조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이혼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확인되지 않음

쟁 점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전 이혼한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조정조서에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 양육비 외 나머지 청구는 이를 포기한 다라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시행령 제45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법률 제8541호 법 부칙 제29조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 부칙 제29조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1999년 1월 1일 이후의 노령연금 급여분부터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됨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20년 9월 20일인 청구인의 경우 해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됨

시행령 제45조의2는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①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②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③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된 기간, ④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함

이혼조정조서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혼인기간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여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 4	<p>전 배우자와 생계유지가 없었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위자료 지급 및 재산 분할하였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은 법령에 따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만으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액에 대해 환수 결정

청구인 주장

전 배우자와 법률혼 기간 중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음
 법원의 조정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하였음

피청구인 주장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은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인정된 기간만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이혼 조정조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등 관련된 기재만 확인되고 연금의 분할과 관련한 기재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쟁 점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조정조서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기재만으로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시행령 제45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법률 제8541호 법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자료로 인정되는 법률혼 유지 기간임에도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한 기간은 법령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름

분할연금 지급권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건이 되면 전 배우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조정조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내용만으로 사회보험의 일환인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례 5	<p>연금분할 비율의 별도 결정이나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분할연금에 대한 합의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수급권 포기한 기간은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수급한 월분부터 청구인의 노령연금액 변경을 결정

청구인 주장

전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귀책이 있는 자로 금삼천만원을 지급 받고 향후 이혼과 관련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특히 전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 까지 포기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함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가 없었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법 제64조의2에 따라 연금의 분할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재산분할의 협의서 등의 제출 및 신고할 수 있으나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법 제64조의2를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 점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은 포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분할연금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시행령 제45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법률 제8541호 법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분할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4조의2에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법 제64조의2를 적용할 수는 없음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는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이나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함

청구인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함

사례 6	<p>공적자료상 확인된 거주불명기간을 실질적 혼인기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하고, 국민연금법 제122조는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에 대한 법원의 재판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일부인용</p>
-------------	--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청구인 주장

전 배우자는 1994년부터 협의이혼일까지 동거, 부양, 가사 등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기간임에도 실질적 혼인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법원의 재판 등에 공단이 법 제122조의 조사·질문의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공권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임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공적 자료로 인정되는 법률혼 유지 기간임에도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법의 다른 조문인 제122조에서 부여한 권한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한 기간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공단에 부여되어 있지 않음

쟁 점

전 배우자가 동거, 부양, 가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법원의 재판 등에 법 제122조의 공단의 조사·질문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공권적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 법령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시행령 제45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법률 제8541호 법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령은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만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청구인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한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확인되어야 함

전 배우자인 참가인이 2021년 11월 4일에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2002년 8월 8일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 존재하므로,

분할연금의 산정대상인 청구인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청구인은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법원의 재판 등에 공단이 법 제122조 조사·질문의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공권적 판단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재판 등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의미하며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지침은 법원의 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을 이에 합당한 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단의 조사·질문을 법원의 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 7	<p>가출, 채무 불이행 등,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액에 대해 환수 결정

청구인 주장

전 배우자는 가정에 기여한 바가 없고,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갖춘 전 배우자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이며, 전 배우자의 채무불이행 등은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음

쟁 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의 지급제한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시행령 제45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법률 제8541호 법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령은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만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한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임

전 배우자가 가출, 채무 불이행, 가정파탄의 책임 등으로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가출,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는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례 8	<p>법률의 무지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분할연금의 지급을 주장하나, 국민연금법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분할연금 지급거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제척기간인 5년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분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 주장

분할연금의 제척기간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하였고, 비록 법률 무지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분할연금은 이혼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급여임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쟁 점

제척기간의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한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 급여 지급,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구 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구 법 부칙 제3조

재결 결과

법 제64조제3항에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할연금 청구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 제도임

국민연금법이 분할연금 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 규정을 달리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음

3 반환일시금

사례	<p>국외이주를 사유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된 자에게 시행령 제16082호 부칙 제4항에 따른 가산이자 지급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국외이주일을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각 해당월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이자 및 가산이자를 합산하여 반환일시금 지급 결정

청구인 주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반환일시금이 심사청구를 통해 지급되었으나, 청구 안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6082호 부칙에 따라 출국일부터 청구일까지 가산이자를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행령 제16082호 부칙에 적용되는 대상은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등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반환일시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임

쟁 점

청구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외 이주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가산이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 급여 지급, 제77조 반환일시금, 대통령령 제25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령 제50조, 대통령령 제25658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16조, 구 법 시행령 제16082호 부칙 제4조

재결 결과

대통령령 제16082호, 시행령 부칙 제4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반환일시금의 지급 사유에서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사유가 폐지되었음에도, 1999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623호 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을 때 적용되었던 조항임

청구인에게 지급된 반환일시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법 제50조에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유족연금

사례

손해보상금이라고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금 수령이라고 본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나, 제3자인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원 수령과 합의서의 내용 및 성격으로 보아 유족연금 지급정지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제3자의 불법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받은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유족연금 지급 정지를 결정

청구인 주장

손해보상금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으로 보아 지급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합의서를 보면 회사는 유가족 측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등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한 금품을 단순히 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쟁 점

청구인이 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국민연금법상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 급여 지급,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4조 유족연금액, 제114조 대위권 등

재결 결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금품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의 불법행위란 공단 및 가입자가 아닌 자에 의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합의서가 망자의 일실수익 등 민사청구채권 일체를 포함하며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합의된 금액을 수령하였기에 청구인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단순히 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청구인의 유족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함

5 기타

사례1	<p>모친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나 실제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부양가족연금액 인정기준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 제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모친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에서 제외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모친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

피청구인 주장

시행령 별표 1에서 부모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쟁 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모친을 부양가족연금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 시행령 제38조

재결 결과

법 제52조에 부양가족연금액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1]에 부모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양가족연금액 지급대상 등 인정기준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 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만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년 6월 9일 선고, 2021구합81820

- 국민연금의 일종인 부양가족연금의 수급요건도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고, 다만 입법자는 위 수급요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대신, 법 제52조에서 생계유지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위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이어서 생계유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할 입법재량권을 대통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임
그러므로 별표1에서 정한 생계유지의 인정기준이 명백히 자의적이어서 입법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재량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이상 별표1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생계유지의 인정기준을 단순화하여 절차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비교형량에 입각한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비교형량이 명백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보이지 않음
또한, 별표1에서 생계유지의 인정기준을 주민등록표상 세대의 동일성으로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연금가입자들로서도 생계유지 요건을 상세히 증명할 필요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된 것임

사례 2	<p>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어 장애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사망일시금 지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가입자의 사망 전 장애연금 지급결정 통지가 도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망일시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인용한 사례 인용</p>
-------------	--

처분내용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후 납부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일시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 주장

망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고, 자녀는 모두 만 25세 이상으로 유족연금 대상도 아닌바, 장애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처분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바, 이미 유효하게 형성된 행정처분을 향후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철회할 수 있게 한다면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철회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쟁 점

장애연금 지급결정 처분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 사망 전 장애연금 지급결정 통지의 도달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 급여 지급,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제80조 사망일시금,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재결 결과

장애연금 지급 결정처분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 처분으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생긴

일반 우편의 일반적인 도달 기간이 4일 정도임을 고려할 때,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결정 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사망일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인용함

[●●●●●●●●]

제4장 재심사청구

- 장애연금 -

1

장애정도

1-1

논의 장애

사례 1	상병의 악화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측정시력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우안 각막열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과 청구일 기준 장애 정도를 등급외로 판정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우안 각막열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 주장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은 우안 시력이 0.02 이하가 인정되지 않아 등급외로 통지를 받았으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은 등급외 판정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우안 시력 0.02 이하로 인정받음

2019년 5월 사고 당시부터 장애연금 청구시점까지 측정된 시력 결과상 우측 눈의 시력이 0.04로 측정된 횟수가 네번, 0.02 이하로 측정된 횟수가 열두번임을 고려할 때, 0.02 이하로 측정된 비중이 75퍼센트를 차지하므로 이는 평균적인 우안 교정시력임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시점에 안전수동으로 측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측정된 시력을 기준으로 등급외 결정한 것은 부당함

피청구인 주장

2019년 5월 11일 우안 각막열상 및 안내이물 등 발생하여 2019년 8월 16일 우안 실리콘 오일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2020년 2월 5일 우안 홍채 복원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후 2020년 8월 17일 및 2020년 9월 21일 외래경과기록지상 우안 교정시력 0.04로 측정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 11월 20일 진단서상 우안 최대교정시력 안전수동, 좌안 최대교정시력 0.2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년 8월 17일 및 2020년 9월 21일 우안 교정시력이 0.04로 측정된 이후 우안의 시력 저하를 일으킬만한 객관적인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20년 11월 12일 및 청구일인 2020년 12월 8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은 그 입법목적 및 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의 체계 및 판정 시기도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의 대상은 되지 않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라 전적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받아 공단이 결정하는 것이며, 자문의사의 자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나온 장애심사 결과는 절차상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임

쟁 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 법령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2020년 8월 17일과 2020년 9월 21일에 우안 교정시력이 0.04로 측정된 이후 우안의 시력 저하를 일으킬만한 객관적인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진료기록지상 2020년 9월 21일 우안 교정시력이 0.04로 측정되었으나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시행한 검사에서는 우안의 시력이 안전수동으로 측정되는 등 측정의 객관성이 떨어짐

수술 부위 회복된 후 시력 저하가 진행될 만한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시력도 2020년 11월 12일 또는 2020년 12월 8일에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력 측정의 오차 또는 환자의 컨디션에 따른 측정 수치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장애결정기준일 현재 장애정도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2	<p>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 악화되어 재청구하였으나, 상병의 악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우안 망막박리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등급 외로 판정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우안 망막박리의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 주장

좌측 주변부 망막변성 발생하여 2020년 7월 레이저 치료 후 우안 교정시력 0.16, 좌안 교정시력 0.125로 측정되어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측정된 진단서 제출하며 장애연금 청구하였으나 미인정됨

2020년 6월 19일과 비교하여 2020년 7월 14일 기준 좌안 최대교정시력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는 2020년 6월 21일 발생한 2차 부상 때문임

그간 수술 및 지속적인 치료를 해왔으나 더 이상 시력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치의 진단이 있음

피청구인 주장

2018년 12월 9일 시력 저하로 내원하여 우안 망막박리로 진단되었고, 2018년 12월 10일 우안 열공 망막박리 수술받음. 2020년 6월 12일 소견서상 우안 시력이 0.2, 좌안 시력이 0.5로 확인되었고, 이후 좌안의 경우 2020년 7월 22일 진료기록지상 주상병에 좌측 상세불명의 주변부 망막변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년 7월 25일 양안 시력 0.2, 2020년 8월 6일 우안 시력 0.16, 좌안 시력 0.125로 좌안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2020년 8월 6일 안저사진 및 빛간섭단층촬영검사상 망막의 시신경 상태로 볼 때 중심시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어 시력저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악화요인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2020년 6월 이후 좌안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청구일인 2020년 8월 6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쟁 점

장애상병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 법령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2020년 8월 6일 안저사진 및 빛간섭단층촬영검사상 망막과 시신경 상태로 볼 때 좌안 중심시력 저하의 요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악화요인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2020년 6월 이후 좌안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음

외상으로 인해 단기간에 시력이 나빠지기 위해서는 망막 중심부의 손상 또는 시신경의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2020년 6월 21일 이후 그에 관한 진료기록도 확인할 수 없음

청구인의 장애결정기준일 현재 장애정도는 국민연금법령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3	장애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장애연금액 변경 청구를 하였으나, 의무기록 등에서 악화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불인정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양안 망막색소변성의 뚜렷한 악화 소견이 인정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

청구인 주장

2018년 11월경 좌우 백내장 수술을 하였고, 그 후 시야와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져 2019년 11월경 우안이 실명되었으며, 전문의에 의하면 시신경위축 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안압약, 염증약을 처방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차도가 없고, 2020년 6월경 좌안도 실명 단계에 이르러, 현재 양안이 빛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전맹 상태로 악화되어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3급으로 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피청구인 주장

2020년 8월 25일 소견서상 시력이 양안 광각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지상 2019년 12월 4일 시력은 우안 광각유, 좌안 0.3으로, 2020년 1월 8일 시력은 우안 광각유, 좌안 0.4로, 2020년 4월 10일 시력은 우안 광각유, 좌안 0.15로 기재되었고, 2020년 8월 25일 안저사진과 망막신경섬유층검사의 시신경 상태, 시야검사 결과지의 신뢰도 및 시야상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두 눈의 시력이 급격하게 광각무로 저하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시력 악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두 눈의 시야는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3급으로 판정함

쟁 점

장애상병의 장애연금액 변경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 법령

법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빛간섭단층촬영과 안저사진 소견상 망막 두께 및 시신경섬유층 두께의 변화는 없으며, 시신경위축 소견이 명확히 관찰되고 있지 않음

즉, 2019년과 2020년 사이 청구인은 양안 시력 저하 진행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소견이 없음

시력은 눈의 기능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므로 동공반사 등의 검사 없이 전기생리적검사만으로 광각무를 판단할 수는 없음

망막색소변성증은 망막의 주변부부터 손상이 시작되어 중심부로 진행되므로 중심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중심시력은 나올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의 양안 망막색소변성증 질환은 시간이 가며 점차 진행되는 질환으로 이후 시력저하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추가 검사를 통하여 추가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장애연금액 변경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는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2 지체의 장애

사례 1	근전도검사 결과, 상병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측 상완신경총손상, 우측 어깨 탈구 등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과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등급외로 판정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우측 상완신경총손상, 우측 어깨 탈구 등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 주장

우측 3대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이의가 없으나, 2019년 12월 7일 장해진단서상 우측 모든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이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상태로 기재되었고, 2020년 12월 23일 지체장애용 관절장애 소견서에도 동일한 소견인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근로복지공단에서의 행정소송에서도 우측 1, 2, 3, 4 손가락이 50퍼센트 감소된 사람으로 산재법상 손가락 장해 7급4호로 인정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함

피청구인 주장

제출된 자료상 초진일은 2018년 11월 19일로 확인됨.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20년 5월 20일 시점의 장애정도는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방사선 영상자료, 근전도 검사결과상 신경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우측 팔의 3대관절과 손가락을 각각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로 인정되지 않아 등급외로 판정함
 청구일인 2021년 1월 5일 시점의 장애정도도 제출된 소견서상 우측 팔과 손가락의 운동범위,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방사선 영상자료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어깨, 팔꿈치,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경우가 아니며, 손가락을 각각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로 인정되지 않아 등급외로 판정함

쟁 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 법령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청구인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함께 제출한 지체장애용 관절장애 소견서상 우측 제1,2,3 수지의 관절운동범위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상태, 즉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년 5월 13일 및 2019년 12월 4일 근전도검사결과 액와신경과 근피신경 일부의 불완전 손상은 있으나, 수부 운동을 지배하는 정중, 요골, 척골신경은 정상소견을 보여 수부의 근력 제한이 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2019년 12월 11일 지체 장애용 소견서상 우측 수지관절의 굴곡근과 신전근의 근력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은 그 입법목적 및 취지를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의 체계 및 판정시기 등이 상이하야 단순 비교의 대상은 아님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장애등급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청구인의 장애결정기준일인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2	<p>다리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인공관절치환의 예후가 불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좌측 무릎연골파열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과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등급외로 판정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좌측 무릎연골파열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 주장

좌측 무릎연골파열은 극히 작은 부분이고, A병원에서 내린 판단은 근로 노동력이 없고, 양쪽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며, 왼쪽 고관절은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전체 서류를 통해 정확한 장애 진단을 내려 주기를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산재요양급여내역상 최초 요양일은 2002년 11월 2일이고, 이후 19일간 통원치료 한 이력이 확인되는 바, 초진일은 2002년 11월 2일로 인정됨

2003년 12월 19일 무릎에서 걸리는 소리가 사라졌다고 기재된 점, 2004년 6월 10일 소견서상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기재된 점, 2004년 8월 13일 방사선 영상상 운동각도, 관절면의 정도, 2004년 12월 24일 근전도검사상 말초신경 및 운동뿌리신경 손상이 없다고 기재된 점, 2005년 3월 18일 무릎 운동각도가 정상으로 기재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04년 5월 3일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2020년 9월 7일 발행한 장애심사용 진단서상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80도로 기재된 점, 2020년 9월 17일 방사선 영상상 운동각도, 관절면의 정도, 치료경과등을 고려할 때, 청구일인 2020년 9월 9일 현재 장애정도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쟁 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 법령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심사용 진단서상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80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정상인 150도의 약 53퍼센트, 즉 47퍼센트 감소에 해당함

청구일인 2020년 9월 9일 기준 장애정도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법령상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방사선 사진 등을 참고하였을 때 양측 고관절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음

1-3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사례 1	정기직권재심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의 악화 소견이 있으나, 직권 재심 당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는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뇌경색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3급에서 4급으로 장애연금액 변경 결정

청구인 주장

2011년 1월 16일 업무상 재해로 쓰러져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최초 장애등급 3급 결정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에 해당하므로 재심사를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2011년도 및 2013년도에 여러 차례 뇌경색이 발생한 상태로 직전심사기준일인 2017년 2월 8일 기준 지능지수 58, 일상동작수행 및 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된 이력이 있음. 이후 제출된 자료상 마비로 인한 기능저하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23일 작성된 진단서에 수정바텔지수가 91점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확인되며, 2020년 8월 4일 시행한 심리평가 보고서 상 전체지능지수 72, 경계선 수준으로 평가된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기직권재심일인 2020년 5월 31일 기준 장애정도는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한 2020년 11월 19일 시행한 심리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가 66으로 확인되나, 해당 내용에 2020년 9월 뇌출혈이 발생하여 3주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장애상태의 악화 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장애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쟁 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 법령

법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2020년 7월 23일 작성된 진단서상 수정바델지수 91점으로 기록된 점, 2020년 8월 4일 시행한 심리평가보고서상 전체지능지수 72로, 경계선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심사청구 당시 지능지수 66으로 확인되는 2020년 11월 19일 심리평가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2020년 9월 뇌출혈이 발생하여 3주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확인되므로, 이는 2020년 9월 발생한 뇌출혈의 영향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피청구인이 정기직권재심일인 2020년 5월 31일 당시 결정한 장애등급에 근거하여 행한 장애연금액 변경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정기직권재심 당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다만, 2020년 9월 발생한 뇌출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새로이 장애등급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구인의 장애상병 뇌경색으로 인한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므로 장애연금액 변경결정처분은 적법·타당함

사례 2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악화 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뇌전증의 사후중증재심일 기준 등급외로 판정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뇌전증의 사후중증재심일 기준 등급의 결정

청구인 주장

발작사고로 2018년 10월 27일 교도소 입소하여 2020년 10월 28일 출소했기 때문에 2018년까지의 A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 및 교도소 정보기록 등을 제출함
 현재는 약처방으로 덜하기는 하지만 매일 2~3회 이상 의식이 없는 상태가 생기고 자극을 받으면 심한 발작 현상, 두뇌 압박, 우울증 등 합병증세가 심한 상태이며, 피청구인이 자료를 원하는 날짜에는 교도소 수감 중이었음을 고려하여 재심사를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2020년 12월 30일 작성된 진단서 및 소견서상 여러 가지 항경련제를 복용하여도 복합부분 발작이 한 달에 15회 이상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상 청구일인 2021년 1월 4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은 2019년 12월, 2020년 10월, 2020년 12월 자료로써 해당자료에서도 뇌전증과 관련하여 정확한 발작유형, 발작횟수, 발작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장애등급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쟁 점

장애상병의 사후중증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 법령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교도소 수감 기간인 2018년 10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27까지 의무기록지상 2018년 12월경 한번 경련 발작의 기록이 있었고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음. 출소 후 진료 기록상에는 10월, 12월 진료에서 담당의가 발작 수차례 했다고 기록함
장애판정기준에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경증발작이 1년 중 6개월 이상 확인되어야 한다는 기준에는 합치되지 않음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 2019년 12월, 2020년 10월, 2020년 12월 자료로써는 뇌전증과 관련하여 정확한 발작 유형, 발작 횟수, 발작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음

청구인의 장애상병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국민연금법령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뇌전증 장애상병의 특성상 향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장애 상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악화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1-4 신장의 장애

사례	신장장애로 장애등급 2급인 자가 신장이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직권재심일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장애등급 4급으로 변경결정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만성신부전의 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 주장

장애연금을 받다가 장애일시보상금으로 수급권이 변경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작년에 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당시 신장 재이식 수술을 할 경우 장애등급 하향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공단 직원이 안내를 해주지 않았기에 투석 기간에는 연금 일시 상향이 있고 재이식 후에는 과거와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장애등급 변경신청을 한 것임

과거 신장이식 당시 장애등급 3급을 받은 이력이 있기에 과거 제도와 현 제도 중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청구인이 받은 처분에 따른 향후 노령연금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하게 알려 줄 것을 주장함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장애연금액 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1999년 5월 25일에 개정된 구 장애심사규정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시행 받은 자는 장애등급 3급으로 규정하나, 2009년 11월 19일 개정된 현행 규정부터는 신장을 이식받은 자를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됨

신장의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수급자가 신장 이식술을 한 경우 신장이식정보를 받아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자를 장애재심사대상자로 발취하여 장애등급을 직권으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재심사한 것임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령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피청구인의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음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써,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의 정도는 정신적·육체적 손상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

쟁 점

장애상병의 직권재심일 기준 장애 정도

관련 법령

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제8절 신장의 장애

재결 결과

구 규정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 받은 자는 장애등급 3급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2009년 11월 19일 개정된 규정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하고 있음

피청구인은 신장의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수급자가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장이식정보를 제공받아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를 발취하여 장애등급을 직권으로 재심사함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을 이식받아 구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 10일 장애등급 3급 결정을 받은 자로서, 그 장애가 악화됨에 따라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28일 장애등급 2급 결정을 받고, 2020년 10월 7일 신장 재 이식술을 함으로써 공단이 심사를 통해 2021년 4월 8일 장애등급 4급으로 변경 결정하였음

장애연금액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은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인 완치일 등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 등은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고시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완치일은 2021년 4월 8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등급 변경결정에는 2021년 4월 8일 당시 시행되는 고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 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장애심사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설령 피청구인에게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심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청구인의 경우에만 달리 배제할 수는 없음.

또한, 청구인의 신장 재이식 수술일이 2020년 10월 7일이고,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였으며, 2021년 3월 2일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1.11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기준인 혈청크레아티닌농도 4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규정상 장애결정기준일인 2021년 4월 8일 현재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의 정도는 정신적·육체적 손상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법령에서 정한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장애등급 4급 결정 시 지급되는 장애일시보상금은 67개월 동안 매월 연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데, 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후발급여 수급권이 발생하고 후발급여를 선택하는 경우 후발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환산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의 이미 지급된 장애일시보상금 상당액을 충당한 후 후발급여를 지급함

환산기간이 경과한 후 후발급여 수급권이 발생하고 후발급여를 선택하는 경우 후발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후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년 10월 15일 선고, 2012두15135, 판결

구 국민연금법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함.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1-5 간의 장애

사례	간이식 전이라도 간의 기능상실과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법령상 장애정도가 간의 장애 최저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외로 판단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일차 경화성 담관염의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 주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B형간염, 담관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A병원 및 B병원에서 경화성담관염, 담도협착은 간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간 내에 좁아진 담도로 인하여 담즙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간경변이 발생하였으며, 더 이상 간기능을 하지 못하여 간이식이 불가피한 상태에 이르렀음

간이식을 하기 전과 후 모두 근로능력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간이식 후에만 장애가 인정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움

접수만을 측정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며, 장애연금의 취지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그로 인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치료비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혜택의 일환이라고 알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현재 건강상태, 전반적인 재정상태,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2006년 5월 23일 A병원에서 경화성담관염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2006년 8월 총담관 협착으로 풍선 확장술 시행하였으며, 2007년 12월 B병원에서 일차 경화성 담관염으로 진단되었고, 청구시점까지 반복적으로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 조영술,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배액술 및 담관 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황달 수치 증가 등 동반된 상태로 2017년 8월 간이식 대기자 등록된 상태로 확인되는 점, 일차 경화성 담관염의 반복적인 악화를 거쳐 간경변증이 진행된 상태로 추정되나, 기록지상 확인되는 치료 및 수술 등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간이식 대기 상태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 질환은 일차 경화성 담관염으로 판단됨
 일차 경화성 담관염의 초진일은 2006년 5월 23일로 인정되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간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고, 혈액검사 결과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간의 장애 최저 인정기준에 해당될 만한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음

쟁 점

장애상병의 청구일 기준 장애 정도

관련 법령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일차 경화성 담관염으로 진단받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조영술을 통한 스텐트 삽입, 담도확장술을 시행하였으나, 질환 자체의 진행으로 간경변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CT나 초음파상 명확한 판독소견이 없고, 간기능은 A표 증상 중증도상 한가지 소견과 B표 차일드푸 10점이나, 경과기록상 보행이 가능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일반상태 C표상 1번 항목에 해당됨. 따라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 정도는 장애등급 3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설령 간경변이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간의 장애 판정기준은 동일하므로 청구일 기준 간의 장애 최저 인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의 정도는 정신적·육체적 손상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법령에서 정한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1-6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사례

첫 번째 암과 두 번째 암의 진단 시기, 발생 부위 등을 고려하여 후발암은 재발암이 아닌 원발암으로 보아 장애정도를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2009년 11월 진단받은 갑상선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의 결정

2020년 7월 진단받은 갑상선암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 주장

2009년 12월, 2020년 8월 동일한 갑상선암으로 수술하였으며,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 비교하여 재발 시기가 길다는 특징이 있고, 2009년 수술 후 정기적 추적 관찰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2020년 8월 수술 후 임파선 전이 발견되어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시 재발 환자라고하여 건강보험 적용되는 주사를 선택할 수 없었는데 국민연금의 재발이 아니라며 장애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판단은 수긍할 수 없으며, 재발임을 증명하는 A병원 소견서를 추가 제출하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2009년 11월 우측 유두암종으로 진단되어 2009년 12월 2일 갑상선아전절제술 시행한 이후 외래 경과관찰하였고, 2018년도까지 시행한 초음파 및 혈액검사결과 유의미한 재발이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이후 2019년 6월 11일 초음파검사상 좌측 상엽 부위의 미세석회화를 동반한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증가되어 미세침흡인검사를 권유한 상태가 확인되고, 2020년 6월 17일 세침흡인검사 시행하여 베타스다분류법 3등급인 불명확한 비정형세포/불명확한 여포상 병변으로 진단되었다가, 2020년 7월 7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유전자검사서 BRAF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확인되었고, 조직검사상 유두암종으로 확진받은 상태로 확인되는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발암보다는 각각의 원발 갑상선암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009년 11월 8일 진단받은 갑상선암과 2020년 7월 7일 진단받은 갑상선암은 각각 별개의 장애로 인정되고, 2009년 11월 8일 진단받은 갑상선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7월 7일 진단받은 갑상선암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결정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2020년 7월 7일 진단받은 갑상선암의 초진일은 2020년 7월 7일에서 2019년 6월 11일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 점

장애상병의 재발암 인정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지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2009년 11월에 진단받은 갑상선암과 2020년 7월에 진단받은 갑상선암이 모두 같은 유두암종이라는 점에서는 이전의 갑상선암이 반대편에 재발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첫 번째 갑상선암과 두 번째 갑상선암의 진단 사이의 기간이 11년으로 길었다는 점과, 초음파 검사에서 최근 좌측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증가되고 있었고, 미세석회화를 동반하고 있었던 점은 반대편 갑상선에 새로운 갑상선암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임. 관련 논문에서도 갑상선 수술 후, 반대편에 발생한 갑상선암을 재발이라 정의하지 않고, 단지 반대편 갑상선암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2009년 12월 갑상선아전절제술 시행한 이후 2018년도까지 시행한 초음파 및 혈액검사서 유의미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임상학적으로 원발암 수술 또는 항암·방사선 치료 이후 5년 이내에 같은 부위에 조직병리학적 특성이 같은 암이 발생한 경우를 재발암으로 보고 있는 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에 서도 암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진단일로부터 5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2020년 8월 수술한 갑상선암은 재발암이라기 보다는 원발 갑상선암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따라서, 피청구인의 장애연금 지급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함

2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2-1 초진일 다툼

사례 1	<p>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이 국민연금 가입 전 진단되었고, 당시 최대 교정시력도 장애가 구체화·객관화된 상태로 판단되므로, 이후에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

청구인 주장

대학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인 교련과목 면제를 위한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망막색소변성증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단순한 야맹증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만 인지했고 자세한 설명은 들은 적이 없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정상적인 일반전형으로 입사하여 12년 동안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5년부터 급격한 시력저하를 느껴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10여년간 개인사업으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완전 시력상실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 점, 장애를 숨기고 취업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도 아니며, 연금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혜택의 근본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니라고 하여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피청구인 주장

1985년 1월 11일 A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상 망막색소변성 진단 및 양안 최대 교정시력 0.4로 확인되고, 1990년 4월 4일 병적기록표상 망막색소변성으로 병역면제 받았으며, 1992년 2월 9일 양안 최대교정시력 0.3, 2005년 7월 21일 양안 교정시력 0.02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받고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로 처음 확인 되는 1985년 1월 11일로 판단되므로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 점

장애상병의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인정 여부

관련 법령

구 법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법 부칙 제8541호 제36조,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현행 장애심사규정은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을 그 질병에 대하여 진단을 받고, 장애가 구체화·객관화되어 나쁜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이거나 중심시야 30도 이하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하도록 규정함

1985년 1월 11일 A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상 망막색소변성증 진단받고 당시 최대교정시력이 양안 0.4로 측정된 이후 회복되지 않고 시력저하가 진행된 점, 1991년 3월 15일 최초 가입한 청구인의 가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애상병인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은 1985년 1월 11일로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대법원 2006년 7월 28일 선고 2005두16918 판결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원심과 같이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유전적인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에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라고 본 사례

사례 2	<p>진료기록지상 검사수치가 비정상 범주로 확인된 후 지속적으로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정상 범주로 확인된 날을 초진일로 보아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만성신부전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

청구인 주장

2015년 3월에 당뇨족으로 입원하였고 2015년 5월부터 내분비내과의 당뇨약을 처방받아야 하기에 정기적으로 하는 혈액검사를 2015년 7월 17일에 하였으나, 당시 주치의는 신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당뇨약과 혈압약을 처방받고 끝났으며, 이후 2016년 5월에 내분비내과 주치의의 권유로 신장내과 첫 진료를 받았고, 2020년 3월부터는 신장투석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일과 15일 차이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현재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장애연금이 꼭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제출된 혈액검사결과지상 2015년 3월 13일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시행한 혈청 크레아티닌이 1.1에서 1.27로 정상소견이었다가, 2015년 7월 17일 혈청 크레아티닌이 1.49, 사구체여과율추정치가 51로 비정상소견이며, 이후 혈청크레아티닌이 정상범위로 확인되는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로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 미만인 때로 최초 확인되는 2015년 7월 17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쟁 점

장애상병의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인정 여부

관련 법령

구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신장의 장애에서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범주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2회 중 1회에 해당하는 때 또는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 미만인 때로 인정하며,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는 우선하는 날로 인정하되, 신기능이 정상소견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초진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함

2015년 7월 17일 혈청크레아티닌 및 사구체여과율이 비정상 범주로 확인된 후 지속적으로 비가역적인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애상병인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2015년 7월 17일로 인정됨

2015년 3월 12일 일시적으로 혈청 크레아티닌 값이 1.46이었다가 이후 수치는 정상범주로 회복되어 2015년 7월 17일 이전의 기간은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1999년 4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 2015년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가입 중인 청구인의 가입이력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2-2 가입기간 다툼

사례	<p>사업장가입자인 때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식불명인 청구인에게, 관할 자치단체에서 사고당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책정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당일로 소급하여 상실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중 발생한 장애로 인정한 사례 인용</p>
-----------	--

처분내용

화재로 인한 부상의 초진일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

청구인 주장

2004년 9월 16일 화재 사고 당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초생활수급이 신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일에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구 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2항은 시군구청장이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화재로 인한 부상의 초진일은 부상을 입은 때인 2004년 9월 16일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3년 8월 8일부터 2004년 3월 22일까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였으며, 2004년 3월 23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였으나 2004년 9월 16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되었음이 확인되어 2005년 4월 29일 공단에서는 수급자 책정일인 2004년 9월 16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4년 3월 14일 기초수급자 수급자자격이 중지되어 중지일의 다음 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는바, 공단은 초진일인 2004년 9월 16일 기준 가입 중이 아님을 사유로 장애연금 미해당 결정함

공단에서 확인한 A시청의 회신 문서에 2004년 9월 16일부터 2014년 3월 14일 까지 청구인의 기초수급자 이력이 확인되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판단근거가 되는 공적자료의 정정없이 공단이 임의로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

쟁 점

장애상병의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인정 여부

관련 법령

구 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제10조 지역가입자, 제14조 자격의 확인, 제58조 장애 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구 법 제8조와 제10조는 당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58조에 따라 장애 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함

법령의 문리적 해석만을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책정된 날을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2004년 9월 16일 화재사고는 청구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일 때 발생하였고, 사고발생일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것은 사고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서 청구인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한 행정청의 적극적 조치로 볼 수 있음

피청구인이 2005년 4월 29일에 수급자책정일인 2004년 9월 16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한 것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화재발생 당시 사업장가입자였음은 인정되는 사실인 바 장애연금 수급조건인 가입 중에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임

구 법 제8조제1항이 당연 사업장가입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국민연금 수급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됨

2011년 6월 7일 개정 법에 따라 시행일인 2011년 12월 8일 이후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동일 사건의 반복 위험 또는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됨

만약 이 사건을 기각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촘촘히 보호하고자 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도리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장애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국민연금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수급자 보호를 위한 행정청의 노력이 오히려 수급자복지를 저해하게 되는 과잉행정의 문제가 남을 수 있을 것임

문리적 해석상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사회적 정의 관념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을 인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3 기타

3-1 완치인정

사례

뇌출혈로 인한 증상의 안정성과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초진일부터 12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뇌출혈 증상의 안정 및 고정성이 불인정되어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 주장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재활치료를 지금까지 병행하고 있으며 24시간 보호자가 케어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2020년도에 한 달 정도 입원했을 때 물리치료사가 평가한 내용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퇴원 이후에 통원치료를 해왔지만 혼자서 10초도 서 있을 수 없고, 혼자 이동도 못하는 상태인 점, 발병 당시와 현재까지 큰 차이가 없다고 치료사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진단서, 소견서, 평가서에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진단서 및 소견서를 추가 제출하므로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기저질환인 만성신부전으로 투석받고 있는 상태로 2019년 10월 15일 좌측 시상부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고, 2020년 7월 13일 장애인복지법상 보행 불가능하며, 수정바텔지수 3점인 상태로 뇌병변장애 심한 장애로 결정된 이력이 확인됨. 이후 제출된 자료상 2020년 9월 11일 수정바텔지수 68점, 바퀴달린 워커 이용하여 최소한의 도움 하에 120미터 보행한다고 기재된 점, 2020년 10월 14일 수정바텔지수 30점, 2021년 2월 10일 수정바텔지수 39점으로 평가되었고, 만성신부전의 후유증상에 따라 증상의 변동성이 큰 상태,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상의 안정성 및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진일인 2019년 10월 15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기 어렵고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쟁 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인정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수정바텔지수 검사상 100점 만점에 2020년 6월 12일 3점, 2020년 8월 14일 40점, 2020년 9월 11일 68점, 2020년 10월 14일 30점, 2021년 2월 10일 39점 등 3점에서 68점까지 변동이 있어 증상의 안정성 및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상 장애결정기준일 현재 증상의 안정성과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초진일로부터 1년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장애결정기준일로 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함

3-2 미납제한

사례 1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3보다 짧은 경우로 미납제한에 해당하여 청구일 기준 수급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인 2013년 7월 22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 주장

2011년 꽃집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많은 손해와 빚을 져 꽃집을 폐업하여 고향으로 가서 쉬기도 했지만 계속 몸이 좋지 않아 2016년에 A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병실이 없어 B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가 응급 투석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투석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인 상태이며, 초진일 이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꽃집 운영이 어려워 납부를 할 수 없었으므로 미납의 고의성도 없는 점, 중간 미납보험료를 2016년도에 완납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함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보험이 종료된다는 예정이나 통보가 있었어야 하며, 병명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을 살펴보면 초진일인 2013년 7월 22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4개월이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20개월이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인 24개월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 제 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함
 상담내역상 2016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연급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당시 징수권 소멸 기간을 포함하여 초진일 기준 미납제한에 해당됨을 이미 안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병명이 확정된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상담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함

쟁 점

구 법에 따른 장애상병의 미납제한 해당 여부

관련 법령

구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85조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혈액검사결과지상 2013년 7월 22일 혈청 크레아티닌이 정상 참고치는 0.5에서 0.9까지이나 1.2로, 사구체여과율추정치는 47로 비정상 소견이며, 이후 혈청크레아티닌이 정상범위로 확인되는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임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 미만인 때로 최초 확인되는 2013년 7월 22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을 살펴보면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인 2013년 7월 22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4개월이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20개월이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인 24개월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함

구 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구 법 제85조에서 초진일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애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연금 기금의 조성에 기여도가 적은 자를 장애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는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연금보험료의 성실납부 의식 제고 및 기금의 재정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 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미납제한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미납제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청구인의 경우에만 달리 배제할 수는 없음

또한, 피청구인의 상담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연금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당시 초진일 기준 미납제한에 해당됨을 안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병명이 확정된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한 내용이 피청구인의 상담이력에 확인되지 아니함

사례 2	<p>후발 장애상병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상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3보다 짧은 경우로 미납제한에 해당하고, 개정 법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전인 2018년 11월 29일 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로서 구 법을 적용하면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뇌경색의 청구일 기준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 주장

현재 장애상태가 새로운 병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야모야병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2018년도 초진일은 인정할 수 없으며, 2016년 이후에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2018년 응급 수술 후 전혀 시력이 나오지 않아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2018년 7월 발생한 뇌경색은 처음 뇌경색 발생 이후 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병변 부위도 반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년도에 발생한 뇌경색과 2018년도에 발생한 뇌경색은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2018년도에 발생한 뇌경색의 초진일은 2018년 7월 24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을 살펴보면 초진일인 2018년 7월 24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8개월, 가입대상기간이 104개월,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납부기간은 8개월로서,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납부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함

초진일이 부칙 제4조 경과조치에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전인 2018년 11월 29일 전에 있는 경우로서 구 법 제67조제1항을 적용하면 2009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 가입한 청구인의 가입이력 기준 장애상병이 가입 중 미발생임

쟁 점

장애상병의 미납제한 여부 및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구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법 부칙 제4조

재결 결과

청구인의 후발 장애상병인 뇌경색은 선발 장애상병 뇌경색과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되며 후발 장애상병 뇌경색의 초진일은 2018년 7월 24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8년 7월 발생한 뇌경색은 처음 뇌경색 발생 이후 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병변 부위도 반대임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을 살펴보면 뇌경색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8개월, 가입대상기간이 104개월,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납부기간은 8개월임

국민연금법 제67조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납부요건은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함

법 부칙 제4조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전인 2018년 11월 29일 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구 법 제67조제1항을 적용하더라도 2009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 가입한 청구인의 가입이력 기준 장애상병이 가입 중 미발생한 경우에 해당함

피청구인이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3-3 장애의 중복조정

사례 1	청구일 기준 우안 황반변성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기존장애로 1등급 하향하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우안 황반변성의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 주장

8살 때 돌에 맞아 발생한 각막손상으로 징집면제를 받았지만, 징집면제의 원인인 각막 손상으로 치료한 A병원의 진료기록은 보관기간 경과로 확인되지 않고, 병적증명서상 징집면제 사유로 기재된 망막박리 또는 망막변성은 알지도 못하는 병명이었으며, 운전 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여, 50대 이전에는 한 번도 안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50대 초반에 좌안 황반변성이 발생하였으므로, 좌안의 황반변성이 가입 전에 발생하였다고 1등급을 하향한 것은 인정할 수 없음

피청구인 주장

2013년 12월 24일 망막출혈이 있었고, 2014년 4월 10일 시력은 우안 0.4, 좌안 안전수지이고, 양안에서 황반변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양안의 황반변성 초진일은 2014년 4월 10일이고, 2015년 9월 18일 시력은 우안 0.7, 좌안 0.3이며, 2015년 10월 15일 시력은 우안 0.4, 좌안 0.3으로 확인되므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5년 10월 11일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이후 망막출혈이 반복되었고, 2017년 11월 24일 시력은 우안 0.2, 좌안 0.04이고, 2020년 2월 11일 진단서상 시력은 우안 0.2, 좌안 0.04로 확인되므로 청구일인 2020년 2월 24일의 장애정도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4급에 해당되나,

좌안의 경우 1982년 병적기록표상 망막변성으로 징집면제되었고, 제출된 자료 중 최초 진료기록인 2011년 4월 5일에 좌안 시력이 0.05로 확인되며, 2013년 12월 24일 좌안 시력은 안전수지, 2013년 12월 24일 및 2014년 3월 13일 진료기록지상 상병명은 격자형 망막변성으로 확인되므로, 1999년 4월 1일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망막변성으로 이미 시력저하가 있었고, 이후 황반변성으로 좌안 시력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시력저하의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청구일인 2020년 2월 24일 기준 장애정도를 현 장애등급 4급에서 기존장애 1등급을 하향하여 등급외로 판단함

쟁 점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기존 장애의 차감 인정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2014년 4월 10일 양안 황반변성과 좌안 황반반흔으로 시력은 우안 0.4, 좌안 안전수지였으나, 2015년 9월 18일 시력은 우안 0.7, 좌안 0.3이었고 2015년 10월 15일 시력은 우안 0.4, 좌안 0.3으로 확인되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5년 10월 11일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2017년 11월 24일 시력은 우안 0.2, 좌안 0.04이고, 2020년 2월 11일 장애심사용 진단서상 시력은 우안 0.2, 좌안 0.04로 확인되므로

청구일인 2020년 2월 24일의 장애정도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4급에 해당될 수 있으나,

1982년 병적기록표상 좌안 시력 0.2, 안과정밀의뢰결과 망막변성으로 징집면제되었고, 황반변성의 초진일인 2014년 4월 10일 이전 진료기록에서 2011년 4월 5일 편안실명 좌안 교정시력 0.05, 2012년 4월 19일 편안실명 좌안 교정시력 0.1, 2013년 12월 24일과 2014년 1월 9일 및 2014년 3월 13일의 상병명은 격자형 망막변성으로 확인되는 바,

망막변성은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1999년 4월 1일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망막변성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 저하가 기존장애의 기준이 되는 최대교정시력 0.3 이하로 인정됨

따라서, 청구일인 2020년 2월 24일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되나 기존장애인 가입 전 발생한 망막변성으로 1등급 하향하면 국민연금법령상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례 2	청구일 기준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기존장애로 1등급 하향하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 주장

본 청구는 청각장애 4급에 대한 청구이지 질병인 중이염에 대한 청구가 아니며, 비록 중이염과 청각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가입 전 귀의 장애 관련한 객관적 검사 또는 진단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35년 전 병역판정 신체검사상 좌측 중이염이라는 한쪽 귀의 질병을 기존장애로 특정하여 1등급 차감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석인 점, 단순 질병을 기존장애로 보아 1등급 차감을 적용한다면 질병과 장애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장애연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중이염은 소아기부터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질병임에도 발병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차단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1985년 6월 25일 병적기록표상 좌측 귀에 만성중이염 소견 확인되며 1992년 8월 7일 A의료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 43데시벨, 좌측 귀 70데시벨로 확인되는 점, 이후 1994년 1월 27일 좌측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유양돌기절제술 시행한 점, 2017년 9월 15일 B이비인후과의원 경과기록지상 20년 전 청력 소실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상 청력 손실은 우측 72데시벨, 좌측 70데시벨로 확인되는 점, 이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좌측 귀 만성중이염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의 초진일은 1992년 8월 7일 A의료원 초진 받은 기록으로 인정되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은 등급외로 판정되고, 청구일 시점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좌측 귀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1등급 차감하여 등급외로 판단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장애의 중복조정 방법에 따라 가입 전에 발생한 좌측 만성중이염과 가입 중에 발생한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은 동일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고, 기존 장애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현 장애상태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 점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기존 장애의 차감 인정 여부

관련 법령

구 법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법 부칙 제8541호 제36조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1992년 8월 7일 검사상 좌측 귀의 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확인되며, 환자병력상 좌측 이루가 어릴 때부터 재발하는 양상으로 기술되어 중이염 발생 시기는 1992년 3월 13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좌측 귀 만성중이염의 발생 시기는 국민연금 가입 전으로 판단되므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장 장애의 중복조정에 규정된 국민연금 장애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기존 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장애 상병인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초진일은 진료기록 및 청력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1992년 8월 7일로 인정되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의 장애정도는 평균순음청력역치 결과 및 진료기록상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급외, 청구일 시점 기존 장애를 포함한 현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장애로 보는 좌측 귀 만성중이염과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바 기존 장애를 포함한 현 장애 상태의 장애등급 4급에서 1등급 하향하여 등급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3-4 기타

사례 1	<p>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때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과 청구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 사례</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기각</p>
-------------	--

처분내용

지대형 근디스트로피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2급 결정

청구인 주장

2014년 3월 19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판정되어 국가에서 지정한 치료불가 중증 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8호의 완치일,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2015년 5월 지체장애 2급을 받은 진단 결과와 현재 장애연금 심사결정 내용이 일치하고 2015년도 장애판정 기준 내용인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 전문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내용도 일치하므로 2015년을 기준으로 완치일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2015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을 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반영되는 연금 제도를 관리, 급여 결정 및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단이 청구가 늦어진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피청구인 주장

근위부 근육 약화 증상으로 인하여 2007년 4월 27일 근전도검사 시행 후 2007년 5월 2일 근육생검하여 근육병증으로 진단된 상태로 확인되고, 초진일인 2007년 4월 27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08년 10월 28일 기준 장애정도는 제출된 자료상 장애등급에 해당될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급외로 판단함

청구일인 2020년 6월 29일 기준 장애정도는 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 6월 29일 진단서와 소견서 및 재활평가기록결과, 2020년 9월 11일 시행한 직접진단 소견서상 확인되는 양측 상하지 근력정도, 기능상태,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2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쟁 점

장애상병의 청구일 전 완치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청구인은 2007년 4월 27일 근전도검사, 2007년 5월 2일 근육생검에서 근육병증 진단되어 초진일은 2007년 4월 27일로 인정됨

근육의 약화와 위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동 상병의 특성 및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일 전 국민연금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치는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지대형 근디스트로피의 초진일인 2007년 4월 27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일인 2008년 10월 28일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일인 2020년 6월 29일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결정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피청구인의 상담 및 안내 이력에 따르면 2015년 8월 10일, 2016년 8월 4일, 2017년 9월 5일, 2018년 9월 11일, 2019년 8월 2일 장애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급여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이 포함된 가입내역안내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된 것으로 기재됨

설령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 하여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사례 2	<p>장애연금 수급권자에는 장애등급 4급도 포함되므로, 장애등급 4급에서 3급으로 변경된 때에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새로운 수급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장애연금액 산정시 기본연금액은 재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p>
-------------	---

처분내용

파킨슨병의 청구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4급에서 3급으로 장애연금액 변경 결정

청구인 주장

장애의 악화가 존재하는 상태로는 장애연금액의 변경 청구권만 보유하는 것일 뿐이고 공단이 장애 재심사를 거쳐 등급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만 변경된 등급에 따른 장애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 바, 장애등급 변경 결정으로 변경 전 등급에 따른 수급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변경 후 등급에 따른 새로운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애연금액 변경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재산정하여 변경된 장애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기본연금액을 장애연금액 변경사유발생일에 재산정하지 않을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기존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3급에서 2급으로 변경된 경우와 변경사유발생일에 동일한 장애등급이 새롭게 결정된 경우, 예를 들어 최초 2급으로 결정된 경우를 비교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장애연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법 제67조와 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애등급 4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국민연금법 제70조는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 완치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각 호의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연금액의 결정 역시 위 각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미 결정된 장애연금액, 즉 최초 장애연금 지급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장애연금 4급 수급권자로서, 수급권자의 지위에서 동일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 청구한 것으로 법 제70조의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 점

장애상병의 장애연금액 변경 시 기본연금액 재산정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1조 기본연금액,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68조 장애연금액, 제69조 장애의 중복조정,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71조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재결 결과

장애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소멸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은 피청구인의 직권 심사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 심사 결과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특히 연금 수급권의 소멸은 법정 사유에 따라 권리가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과 같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제71조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등급 및 장애연금액 변경이 결정된 것을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고 새로운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

법 제69조에서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중전 장애 정도가 변경 또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중전 장애연금 수급권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병합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장애연금액 변경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최초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후, 이전보다 낮은 소득으로 추가 가입기간을 늘린 사람의 경우 B값 하락으로 오히려 기본연금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임

장애연금액 변경사유발생일까지 변경 전 장애연금액을 계속 지급받고 있던 자와 같은 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장애연금액이 장애등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반드시 동일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법 제68조제2항에서 장애등급 4급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68조의 제목이 장애연금액인 점,

장애등급 4급에 대해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직권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아닌 1회에 한해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이며, 이런 사유로 장애 호전시 연금액 감액을 위한 정기직권재심사가 불필요하며 장애가 악화되면 본인이 직접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법 제71조에 따르면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40퍼센트를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임

